학업성적관리규정



운봉중학교

제 1조. 목적	1
제 2조. 방침	1
제 3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교과협의회 구성	성.운영 2
제 4조. 평가의 목표 . 내용 및 방법	3
제 5조. 지필평가	4
제 6조. 수행평가	13
제 7조. 인정점 부여	
제 8조. 학업성적 결과 처리	
제 9조. 출결 상황 관리	
제 10조. 교과학습발달상황 관리	
제 11조. 독서활동상황 관리	
제 12조.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관리	
제 13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관리	
제 14조.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정정	
제 15조. 학생 포상	27
[별지1] 학적처리 관련 용어	29
[별지2] 정기고사 결시생 인정점 부여 및 관리·	30
[별지3] 시기별 업무추진 내용	33
[별지4] 학업성적 평가 및 보안관리 단계별 업두	구 매뉴얼 ······ 39
[별지5] 평가 단계별 보안관리 계획	42
[별지6] 학생평가 시행 보안 관리 점검표	43
[별지7] 2022학년도 고사 실시 계획	44
[별지8] 2022학년도 고사 원안 양식	49
[별지9]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처리 절차	51
[별지10]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행위 예방 조치	53
[별지11] 이의신청처리 절차 및 기간	
[별지12] 평가 관련 사안(민원) 발생 시 처리 …	55
[별지13] 일부 문항 출제 오류로 인한 재시험처	
[별지14] 학생평가 관련 사안 보고	

2022 운봉중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제 1조. 목적

본 지침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교육부훈령 제393호, 2022.1.17)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중학교에서 적용할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 제정의 기초가 되게 하고 학업성적 평가 및관리의 적정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방침

- 1. 학교는 교과학습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를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내실 화를 도모한다.
- 2.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각 교과협의회 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 3.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전라북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관리방안」에 따른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 4.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수행평가 100% 교과는 제외)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교육 과정·수업·평가·학교생활기록의 유의미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5. 수행평가는 성취기준에 기반하여 수업시간 중에 실시한다. 수행평가 반영 비율은 과목별 학기 단위 성적 총점의 40% 이상¹⁾으로 하고,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 중심 수업에 맞는 과정중심형 수업밀착 평가를 실시한다.
- * 교과목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 으로 정하여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 *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지필평가 실시가 어려운 학교(과목)는 학업 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 6. 지필평가의 횟수는 학기당 2회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교과협의회 협의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1회만 실시할 수 있다.
- 가.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학기단위 과목 총점의 70% 이상2)인 과목
- 나. 시수가 적은 과목(1단위)
- 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과목
- ※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수행평가 실시가 어려운 학교(과목) 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행평가 없이 지필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 7. 자유학기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학교별로 자유학기의 취지에 맞는 평가 방안을 마련하
- 1)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 2)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교육청의 별도 지침에 따라 '40%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원점수/과목평균'란은 '공란'으로 두고, '성취도(수강자수)'란에 'P'로 입력한다. 또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에 'P'를 입력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체육·예술 과목은 실기능력, 교과적성 포함)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 8.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 및 각종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9.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부모(친인척) 교직원이 재직하는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년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 자녀와 관련한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소규모 학교 등)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평가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야 하다
- 10.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을 전라북도 학업성 적관리 시행지침[별지9]을 참조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마련하고 학기 초에 학생, 학부 모, 교직원에게 안내한다. 또한 부정행위 적발 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 11. 성적관리의 부적정 사례 및 비교육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연수 및 확인 점검을 강화하여 평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확보에 노력한다.
- 12. 학업성적관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별 교과협의 협의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 3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교과협의회 구성,운영

1.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 가.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 및 관리, 이에 따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교무부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 다. 위원의 수는 학교장을 뺀 나머지 전 교사가 위원(비교과 교사 제외)이며, 위원은 당해 학교 학업성적관 리 관련 업무에 대해 심의한다.
- 라. 위원의 임기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로 한다.

2.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 가. 교육평가 및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고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책 무성을 높이다.
- 나. 학업성적 및 평가관리, 학교생활기록부의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상시 운영한다.
- 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 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관련 자료와 함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

여 위원들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고, 심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관련자료 및 회의록 스캔 하여 첨부)를 얻은 후 시행한다.

3.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내용

- 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 나. 각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제출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요소·방법·시기·횟수·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 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 라.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홍보, 평가결과 후속조치(이의제기 등))
- 마.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 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
- 사.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지침 이외의 세부사항 심의(가산점 부여 항목, 기준, 가산점 부여 대상자 심의 결정 등)
- 아. 자유학기 및 연계학기의 활동평가 기준 및 방법
- 자.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4. 교과협의회(소규모 학교 학년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가. 교과협의회는 교과군 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인문교과협의회 : 국어, 영어, 도덕, 사회(역사), 한문. 정보
- 2) 자연.예체능교과협의회 : 수학, 과학, 기가, 음악, 미술, 체육
- 나. 교과(학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다.
- 1)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계획 수립
- 2)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기준 마련
- 3)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벗어난 문항 유무 상호 점검
- 4) 채점 및 평가 결과 분석·환류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 5) 기타 교과 관련 업무
- 다. 교과(학년)혐의회는 상시 운영(학기당 2회 이상)하고 혐의록을 비치한다.

제 4조. 평가의 목표 . 내용 및 방법

- 1. 교과학습의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하며, 학생의 교육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평가기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점용한다.
- 2. 성취기준이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활동의 기준을 의미하며, 학생의 특성·학교 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협의회를 통해 재구조화할 수 있다.
- 3. 각 교과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평가 영역·요소·방법·시기·횟수·반영비율, 수행평가 세부기준 (배점) 등은 각 학교·교과지도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

- 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또한,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도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4. 확정된 평가 계획은 정보공시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한다. 또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사항을 확정하고 평가 실시 전에 재공지한다.
- 5.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 및 각종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 6. 모든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는 사전에 교직원 연수를 통하여 충분히 안내하고 유의사항 등 평가 전반 내용에 대하여 교직원간에 충분히 논의한다.
- ※ 중학교 3학년 2학기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는 <u>후기고 내신성적산출 기준일</u> 이전까지 입력하고 마감한다.
- 7. 지필평가 고사원안, 문항정보표의 양식과 작성 방법 등을 학교 실정에 맞게 일치시켜 안내하고, 결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며,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 8. 자유학기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학교별로 자유학기의 취지에 맞는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다.

제 5조. 지필평가

1. 평가문항 출제

- 가. 평가문항 출제에 관한사항(출제범위, 시험시간, 공동출제, 공동채점, 기타 등)은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반드시 협의하고, 그 결과를 협의록으로 남긴다. 또한 평가 운영 기간(출제, 시행, 채점 등) 중에는 교무실, 인쇄실, 평가관리실 등을 학생출입 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 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지필평가 관련 보안규정과 시험지 유출시 [별지4, 별지6 참조]하여 [별지12]대로 처리하고, 평가 문제는 평가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 다. 평가문제는 타당도·신뢰도·변별도를 높이도록 출제하고, 평가의 영역·내용 등을 포함한 문 항정보표 등을 작성하여 활용하되, 동일 학년·교과를 2명 이상의 교사가 담당할 때에는 담 당 교사 간 협의하여 공동 출제한다.
- 라. 모든 출제 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여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출제하고 문항의 수준별 난이도를 고려하여 배열한다. 또한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고 동점자가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문항수를 적절하게 출제하고, 문항당 배점 및 채점기준 세분화에 유의 한다.
- 마. 모든 출제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1) 시판되는 참고서(자습서)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출제하는 일
- 2) 전년도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다시 출제하는 일
- 3) 추측에 의하여 정답을 쓸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일
- 4) 객관성의 결여로 정답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일
- 5) 고시원안 출제 후 출제된 문제를 수업 중에 지도하거나 문제의 정답을 암시하는 일
- 6) 사전에 출제 예상 문제를 유인물로 배부하거나 가르쳐 주고 출제하는 일
- 7) 평가 관련 자료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하여 평가 관련 자료가 사전에 유출되는 일

- 바. 지필평가 중 서답형 총 배점 비율은 30% 이상으로 하되,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교과협 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여 학업성적관 리규정에 반영한다.
 - ※ 서답형: 기존의 주관식 문제를 말하고 '단답형, 완성형, 서술형, 논술형' 등이 있음.
- 사. 서술(논술)형 문항은 국어, 사회(역사포함),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경우 지필평가 총 배점의 20% 이상, 도덕 교과는 지필평가 총 배점의 10% 이상 출제하며, 이외의 교과는 가급적 서술(논술)형 평가 문항을 포함하여 출제한다.
 - ** 다만, 지필평가에서 실시하기 곤란한 논술형 평가를 수행평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배점은 학기당 과목별 총점의 20% 이상으로 한다. 이러한 경우에 지필평가에서는 서답형 (단답형, 완성형)의 비율을 고사별 총 배점의 20% 이상으로 한다. 이때 채점 기준표(답안, 유사답안, 부분점수 등 점수 부여 방법 등)를 완전하게 갖추어 정확한 채점이 되도록 한다.
 - ※ 학기 단위 지필평가에서 서술(논술)형 배점은 총 배점의 20%(평균)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예) 1차고사 지필평가 서술형 20% + 2차고사 지필평가 서술형 20%

1차고사 지필평가 서술형 10% + 2차고사 지필평가 서술형 30%

1차고사 지필평가 서술형 0% + 2차고사 지필평가 서술형 40%

- 아. 서답형 문제는 문항정보표에 문항별로 채점 기준을 명시하되, 문항당 배점을 다양화하고 부 분점수 부여에 유념한다.(평가요소별 배점 등)
- 자. 문항정보표는 NEIS에 있는 양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내용영역, 성취기준(내용 혹은 성취기준 번호), 난이도, 정답, 문항별 배점 등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NEIS에서 입력할 수 없는 채점기준표 등은 학교단위로 양식을 제작하여 사용한다.
- 차. 과목별로 제출한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 등은 평가담당교사, 평가담당부장, 교장 등이 철저하게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해당 교사에게 통보하고 수 정·제출하도록 한다.
- 카. 과목별·평가 영역별 비율과 평가 방법은 전라북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참조하여 교 과협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여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반영한다.
- ※ 2022학년도 과목별 평가 영역별 비율과 평가 방법은 아래와 같다.
- ※ 과목별 평가영역 비율(100%=지필평가 반영비율+수행평가 반영비율)

🥡 국어과

과 목 명		국어							
평가방법	지필	평가		수행평가	_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말하기·듣기	쓰기	독서 포트폴리오					
영역만점	70점 30점(이상) (이하) (20점(이상))	70점(30점(이상) 이하) (20점(이상))	10점	20점	10점				
세부 반영비율	21% 9%(이상) (이하) (6%(이상))	21% 9%(이상) (이하) (6%(이상))	10%	20%	10%				
기본점수	0점	0점	4점	8점	4점				
평가 1학기 시기 2학기		6~7월 중 11월 중 수시 평가							

수학과

과 목 명	수학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	%	7(0%					
	2차고시	}(30%)	배움평가	역량평가					
ചിച്ചി വിവി		nlele)	(포트폴리오,	(단원보고서, 프로					
평가영역	선택형	서답형	서술평가,	젝트, 5분프로젝트,					
		(서술)	구술평가 등)	수업관찰일기)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40점	30점					
세부반영비율	70%০ চ	30%이상 (20%이상)	40%	30%					
기본점수	0점	0점	16점	12점					
평가	2차고/	사기간	수시(6월3	30일 이전)					
시기	1학년은 자유학년제	운영으로 평가를 실시	하지 않으며 별도의	평가계획에 따름					

🦥 도덕과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	70%
	2차고사(30%)	행동(40%) 가치(30%)
평가영역	선택형 서답형 (서술)	탐구활동 마무리활동 가치탐구 가치실천
영역만점	70점 30점 (이하) (10점)	20점 20점 15점 15점
세부 반영비율	21% 9% (이하) (이상)	20% 20% 15% 15%
기본점수	0점	8점 8점 6점 6점
평가 1학기	7월 중	학기 중
시기 2학기	12월 중	학기 중

🦥 사회(역사)과

	ı								
al P mi	사회/역사								
과 목 명	(:	2학년 역사:	1,2학기	/ 3학년 역사	: 1학기 / 3학년 사	회: 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1차고	사(30%)	2차고	고사(30%)	배움 평가	역량 평가			
평가영역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학습지,교과서단원정 리)	역당 평가 (토론, 논술형)			
영역만점	70점 (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 (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20점	20점			
세부반영비율	21% (이하)	9%(이상) (6%(이상))	21% (이하)	9%(이상) (6%(이상))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8점			
평가 1학기	5 °	월 중	7	월 중	학기] 중			
시기 2학기	10	월 중	12	2월 중	학기] 중			

🧓 과학과

과 목 명	과학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1차고서	}(30%)	2차고/	\}(30%)					
평가영역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실험보고서	탐구실험태도			
영역만점	70점	30점(이상) (20점(이상))	70점	30점(이상) (20점(이상))	20점	20점			
세부반영비율	21%	9%	21%	9%	20%	20%			
기본점수	0	0	0	0	8 8				
평가 시기		중 월 중	6-7 월 중 12월 중 수시			시			

🧓 기술·가정과

과 목 명	기술 · 가정								
평가방법	지필	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30	%		70%					
	2차고시	[(30%)							
평가영역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평가1	평가2	평가3				
영역만점	80점 (이하)	30점(이상)	25점	25점	20점				
세부반영비 율	80% (이하)	30%(이상) (0%(이상))	25%	25%	20%				
기본점수	0점	0점	10점	10점	8점				
평가 1학기	6~7 §	수시	수시	수시					
시기 2학기	11~12	월 중	수시	수시	수시				

🧓 체육과

			1 학기		2 학기			
	구 분	수행	평가	계	수행	평가	-an	
		기능	건강체력	А	기능	건강체력	계	
1	배점	±1	O ≅Lı∃ zĭl		7 1	O ≑b ∃ z11		
학년	세부반영비율	^1	유학년제		^f-	유학년제		
2	배점	90	10	100%	90	10	100	
² 학년	세부반영비율	90%	10%	100%	90%	10%	%	
억인	기본점수	36%	4%	40%	36%	4%	40%	
	배점	90	10	100%	80	20	100	
3학년	세부반영비율	90%	10%	100%	80%	20%	%	
	기본점수 36% 4%		4%	40%	32%	8%	40%	
11	명가 시기	3월~6월	3월~5월	3월~5월 8월~11월				

★ 평가 영역별 비율(100%=수행평가 반영비율)

🧓 외국어(영어)과

평가방법	지 필		-	수 행 평 🤅	7}		
반영비율	30)%			70%		
പ്ചിവി	2차고/	५}(30%)	듣기	쓰기	어휘	참여도	포트 폴리오
평가영역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ebs영어 듣기평가	문장쓰기	단어 익히기	수업 참여도	포트 폴리오
영역만점	70점이하	30점이상 (20점이상)	20점	20점	10점	10점	10점
세부 반영비율	30%		20%	20%	10%	10%	10%
기본점수	0	점	8점	8점	4점	4점	4점

🧓 음악과

(1) 1학기

평가방법	지 필	지 필 평 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C	1%		100	%		
	1차고사	2차고사	丑	현			
평가영역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가창	기악	감상	생활화	
영역만점			30점	30점	20점	20점	
세부 반영비율			30%	30%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12점	12점	8점	8점	
평가시기			3월~4월 중	4월~5월 중	5월~6월 중	6월~7월 중	
출제-평가 채점			수행평가 기준안을 미리 학생들과 공유하고, 객관성에 근거하여 평가				

(2) 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평가		
반영비율	0	%		1	00%		
പ്പാ പ്ര	1차고사	2차고사	フトスト	기악	창작	생활화	
평가영역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감상	기억	34	(생활외	
영역만점			30점	30점	20점	20점	
세부			30%	30%	20%	20%	
반영비율			3076	3076	2070	2070	
기본점수	0점	0점	12점	12점	8점	8점	
평가시기			8월~9월 중	9월~10월 중	10월~11월 중	11월~12월 중	
출제-평가			수행평가 기준안을 미리 학생들과 공유하고, 객관성에				
채점			근거하여 평가				

🧓 미술과

과 5	록 명		미 술								
평가	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기	+			
반영	비율		09	%			100%				
급 기	ൻൻ	1차고	사(0%)	2차고	사(0%)	ਜ ਨੀ 1	교육이	-11 ≳1 ⊓1 71.11			
평가	24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표현1	표현2	체험 및 감상			
영역	만점					35점	35점	30점			
세 반영	부 비율					35%	35%	30%			
기본	점수	0	점	0	점	14	14	12			
평가	1학기					3월	4월	5월			
시기	2학기					9월	10월	11월			

🧓 한문과

<1학기>

과 목	명	한 문								
평가병	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	비율		30%	6			70	%		
		1차고서	\ - (30%)	-	-		옥편			
평가영역	rl 6-l					호짓기	활용하여	한자	포트	
	3 =	선택형	서답형	-		오것기	한자	쓰기	폴리오	
							찾기			
영역민	만점	70점	30점	-	-	20	20	20	10	
세부반영	경비율	21%	9%	-	-	20%	20%	20%	10%	
기본점수		07	0점 -		_	8점	8점	8점	4점	
평가 시기	1학기	4월	중	-	-	5월	6월	수시	수시	

<2학기>

과 목 명		한 문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9	%			70	%	
퍼리선선	1차고	사(30%)	-	-	오륜책	사자성어	한자	포트
평가영역	선택형	서답형	_	-	만들기	로 4행시 짓기	쓰기	폴리오
영역만점	70점	30점	-	-	20	20	20	10
세부반영비율	21%	9%	-	-	20%	20%	20%	10%
기본점수	0	점	-	-	8점	8점	8점	4점
평가 시기 2학기	10 4	월 중	-		10월	11월	수시	수시

🧓 정보과

1) 1학기(3월 ~ 8월)

과 목 명		 정보							
평가방법		지필	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50)%		50%				
	1차고사(0%)		2차.	고사(50%)					
평가영역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정보문화 프로젝트	프로그래밍			
영역만점	-	-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30점			
세부 반영비율	-	-	35% (이하)	15% (이상)	20%	30%			
기본점수	-		0점		8점	12점			
평가시 1학기	-		6월 중		3월 ~ 4월	5월 ~ 6월			
기 2학기		-		-	_	-			

2) 2학기(8월 ~ 12월)

과 목 명	정보							
평가방법		지필	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50)%		50	1%		
	1치	고사(0%)	2차고	고사(50%)				
평가영역	선택형	서답형 (서술형)	선택 형	서답형 (서술형)	정보의 구조화	피지컬 컴퓨팅		
영역만점	-	-	70점 (이하)	30점 (이상)	20점	30점		
세부 반영비율	-	-	35% (이하)	15% (이상)	20%	30%		
기본점수 -		0점		8점	12점			
평가 1학기	-			-	=	-		
시기 2학기	-		11월 중		9월 ~ 10월	11월 ~ 12월		

2) 교과별 지필평가 시행계획

학기	고사	1 학 년	2 학 년	3 학 년
1	1차		국어, 역사, 과학, 한문 4 과목	국어, 역사, 과학 <mark>3</mark> 과목
학 기	2차	자유학년제	국어, 도덕, 역사, 수학, 과학, 기술·가정, 영어 7과목	국어, 역사, 수학, 과학 기술·가정, 영어, 정보 7과목
2	1차		국어, 역사, 과학, 한문 4과목	국어, 사회, 과학 3과목
학 기	2차	자유학년제	국어, 도덕, 역사, 수학, 과학, 기술·가정, 영어 7과목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영어, 정보 7과목
수행	평가	교과 평가 계획에 맞 게 실시, 특히 자유학 년재의 취지에 맞게 점수화하지 않는다.	교과 평가 계획에 맞게 실시	교과 평가 계획에 맞게 실시 특히 3학년은 <u>후기고 내신성적</u> 산출 기준일 이전까지 입력 마감

2. 고사 관리 방법

- 가. 평가문제 인쇄 및 관리
- 1) 과목 담당교사가 출제한 고사 원안은 소정의 결재 과정을 거친 후 관리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인쇄를 의뢰한다.
- 2) 평가관련 교직원은 고사 원안의 결재, 보관, 인쇄 등의 전과정에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한다.
- 3) 학교장은 정기고사 일정 발표 후부터 정기고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출제장소, 인쇄실, 평가관리 실 등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 또한, 철저한 보안 장치를 마련하고 보안 및 인쇄관리 담당 자를 지정한다. 특히 인쇄관리 담당자는 평가대상 학생의 부모 및 친인척이 아닌 직원으로 지정한다.
- * 평가관리실이란 평가 기간 동안 보안 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곳(특별실, 교무실 등)을 말함
- 4) 출제교사는 인쇄된 문제지를 지정된 장소에서 검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포장·봉인하고 여분의 문제지와 함께 평가담당교사에게 인계한다.

나. 고사 시행

- 1) 정기고사는 고사감독, 채점, 입력, 확인 등의 모든 과정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 2) 정기고사 시정표에 문답지 배부 및 유의사항 전달시간 5분을 반드시 배정한다. 특히 종료령이 울 린 후에는 답안지 표기를 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답안지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시험장 또는 교무실에서 입회인 입회하에 해당 답안지 내용과 동일하게 해당 학생이 새 답안지 에 옮겨 기록한다.

- 3) 감독교사는 가능한 동일교사가 동일고사실에 중복 배치되지 않도록 배정하며, 담임교사의 자기학급 시험감독 배정 및 교사와 자녀 및 친인척 관계에 있는 학생의 학급 감독 배정을 배제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도록 감독을 배정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얻은 후시행한다. 특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독교사를 교체해야 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고사시행전에 반드시 평가담당교사와 협의하여 고사감독 배정표에 반영하고 평가담당교사가 고사전 또는 후에 결재를 득한다.
- 4) 가급적 1학급을 2개 이상 고사실로 분반하여 실시. 고사실 당 2인 감독 배치(학급당 18명 이 상인 경우 필수사항³)). 학부모 시험 감독 보조, 복도감독 배치 등 학교 실정에 맞는 시험감독 강화 방안을 강구하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
- 5) 감독교사는 고사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사 시간 종료 전에 학생이 퇴실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한 학급담임교사와 감독교사는 답안 작성 요령과 지정된 필기도구 사용법을 사전에 지도해야 하며, 답안 표기 내용 정정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6) 시험 시작 전 감독교사는 휴대전화, 무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부정행위에 사용 가능한 전자기기**를 수거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는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 7) 감독교사는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부정행위 발생 시 학교규칙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한 후, 감독을 엄정하게 한다. 또한 불필요한 말이나 행위를 금하고 답안지의 확인란에 날인 또는 서명한다.
- 8) 출제교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담당과목 평가시간에 감독을 배정하지 않고 교무실에 서 대기하여 학생들의 질문에 대비한다. 만일 고사 도중 출제문제에 오류가 발견되면 고 사 진행시간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다. 오류 문제를 정정하여 고사를 진행하기 에는 시간이 부족할 경우 시험 시간을 연장하고 고사 종료 후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에 이를 알린다.
- 9) 감독교사는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고 응시현황(재적인원, 응시인원, 결시자수, 결시자 명단 및 결시 사유 등)을 파악하여 답안지 표지(답안지 회송용 봉투)의 소정란에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하여 평가담당 교사에게 인계한다.
- 10) 평가담당 교사는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고 답안지를 출제자(교과담당 교사)에게 인계하여 채정하게 한다.
- 11) 가급적 고사 당일 정답을 발표하되, 서답형 문제는 채점 기준, 인정(유사)정답 및 부분 점수를 함께 공개한다.
- * 중학교 3학년 2학기 지필평가는 <u>후기고 내신성적산출 기준일</u> 이전까지 입력하고 마감한다. 다. 채점 및 답안지 처리
- 1) 정기고사 답안지의 채점은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장의 승인 없이 지정장소 이외로의 반출을 자제한다.
- 2) 답안지의 수기 채점 시에는 정·오답 표시를 하고, 채점 및 점수 표기의 정확성 유무를 교 사를 달리하여 2회 이상 검토한다. 또한 정·오답 표시로 인하여 답안내용이 가려지거나

³⁾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교육청의 별도 지침에 따라 '학교 자율'로 결정할 수 있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 3) 답안지를 전산 처리할 경우에는 서답형 문항에 정·오답 표시를 하고, 채점 및 점수 표기 의 정확성 여부를 교사를 달리하여 2회 이상 검토한다. 또한 정·오답 표시로 인하여 답안 내용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 4) 채점 등 평가 결과를 전산 처리할 경우, 교과담당 교사는 전산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하고, 그 결과를 교과담당 교사가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킨다.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지필평가 결과는 학생 본인에게만 공개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타인에게 성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의신청 기간은 [별지11]을 참고하여 3일로 한다.)
- 5) 서답형 답안지 채점 시 이미 정해진 문항별 배점과 채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과정이 나 타나도록 한다. 채점 과정에서 유사정답이나 부분점수를 부여해야 할 답안이 추가로 있을 경우에 는 교과협의회에서 채점기준을 수정·보완한 후 채점기준표를 다시 결재 받고 채점에 적용한 다.
- 6)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표 등의 내용은 결재 후 수정을 필요로 할 경우 반드시 결 재 절차를 거친 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최종 결재물을 근거로 채점이 이루어져야 한 다. 또한 평가담당교사는 수정전·후의 자료를 함께 보관한다.
- 7) 성적처리 및 학생 확인이 완료된 정기고사 결과물(답안지,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서답형 채점기 준표 포함)은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5년간(성적 처리 완료 시점부터 5년) 보관하여야 한다.

제 6조. 수행평가

1. 수행평가 방법

- 가. 구성적 반응 요구형 : 논술형 문항, 도표나 그림에 제목 붙이기, 시각적 자료 만들기(개념 도나 흐름도, 그래프나 표, 도안 등)
- 나. 특정 산출물 요구형 : 수필, 실험·실습, 이야기·극본, 시(poem), 포트폴리오 미술작품, 과학 프로젝트, 모형(model)구성, 비디오·오디오구성
- 다. 특정 활동 요구형 :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구두발표, 무용·동작발표, 과학실험 시연, 체육 경기, 연극, 토의·토론, 음악발표
- 라. 과정 표현형 : 구두질문, 관찰, 면담, 회의, 과정(process)에 대한 기술, 생각하는 과정을 말로 표현(think aloud), 학습 일지

2. 수행평가 시행

- 가. 수행평가의 평가 영역·요소·방법·횟수·반영비율, 수행평가 세부 기준(배점), 기본점수의 부여 등은 과목별·평가영역별 비율에 맞게 교과협의회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나.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수행평가의 대상, 시기, 내용, 처리방법, 평가 기준, 미응시자 처리기 준 등)을 학교 홈페이지나 유인물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기 초에 사전 안내한다.
- 다. 수행평가 계획 수립·운영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1) 학교와 교과의 특성에 맞게 교육 내용 재구성, 학생 참여형 수업 등 다양한 수업상황 안에서 흥미, 자기 효능감, 참여, 협력, 배려, 경청, 책임, 실천, 동기, 가치 등의 평가 요소를 적절하 게 반영하고, 또한, 지식보다는 역량을, 수행 결과만이 아닌 수행 과정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한다.

- ※ 중학교 3학년 2학기 수행평가는 후기고 내신성적산춬 기준일 이전까지 입력하고 마감한다.
- 2) 수행평가는 학생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정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 ※ 복수의 학생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둠활동 등을 평가할 때에는 개별 학생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학습과제에 대한 수행 과정과 결과가 평가될 수 있도록 유의한다.
- 3)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제고사 형태의 지필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특히, 정기고사 시간에 지필형 수행평가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다만, 전국 시·도 차원의 영어들기평가는 예외로 하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한다.
- 4) 특정 기간에 교과별로 수행평가가 겹치지 않도록 시기를 적정화한다.
- 5) 체육·예술 교과(군)는 이론, 기능, 감상, 미적체험, 이해, 지식 등에 대한 반영비율을 균형 있 게 설정하여 실기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모든 영역은 수업 시간 내에 제작된 작품 및 제작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 6) 모둠별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노력 정도 및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7) 자유학기 중에는 교과별 성취수준을 확인하고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관 찰평가, 형성평가, 자기성찰평가 등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 8) 전·출입 학생 발생 시 전출교는 전출일까지의 수행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전입교에서는 전출교에 수행평가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라. 평가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과 평가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u>이의신청(이의신청 기간 3일) 있을 때에</u>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마. 학교 수행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행평가 인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기 수행평가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 바.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을 반영**하되, 기본점수의 부여 여부, 부여 점수의 범위 등은 **각 교과별 평가규정에 따른다**(6~11쪽 참고).
- 사. 지체장애 및 감각장애(시각, 청각)로 인하여 특정 교과(목)의 수행평가가 불가능한 영역의 경우, 성적처리 방법은 일반학생과의 형평성·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되 다음 공식을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예시>

* 기본 점수가 있는 영역의 경우

점수 = 해당영역 수행평가 기본점수

+ 해당영역 수행평가 배점(기본점수 제외) × <u>당해자의 지필평가 득점</u> 지필평가의 배점 총점

※ 기본 점수가 없는 영역의 경우

점수 = 해당영역 수행평가 배점 ×

당해자의 지필평가 득점 지필평가의 배점 총점

- ※ 국어와 외국어의 듣기·말하기도 이에 준하여 적용
- 아. 수행평가 결시자에게는 1회의 응시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 이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평가 처리 기준(결시자 포함)은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협의하고, 학생의 이의신청을 거친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적용한다.

수행 평가 결시자 처리

- 1) 공결, 상고, 병결로 인한 결시자는 차후의 시간에 평가하도록 한다.
- 2) 장기 결석자는 2차고사 성적처리 마감일까지 기회를 부여한다.
- 자. 성적 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⁴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 후 1년 이상 당 해 학교에 보관**하며,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 차. 수행평가 결과물은 학기초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생들의 이의신청·처리·확 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 **1년 동안 보관**한다.
- 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수행평가 결과는 학생 본인에게만 공개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타인에게 성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타. 학습독서 활동 결과물의 수행평가 반영
-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독서를 활성화하고, 모든 교과에서 과목 수행평가 총점의 일정 비율을 과목 관련 독서 실적으로 반영토록 권장한다.
- 교육과정 연계 독서 활동의 가치가 반영되도록 하되, 교과협의회 협의 학업성적관리위원
 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파. 국어과의 독서평가는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관련하여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를 권장하되, 반영비율 및 실시 여부는 교과협의회의 협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 종 결정한다.

제 7조. 인정점 부여

- 1.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는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정감염병, 병원입원 등에 의하여 일반학생들과 함께 평가하기가 어려우나 학생과 보호자 등이 응시를 원할 경우 특별 시험장을 설치하여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결시를 하는 경우, "정기고사 결시생 인정점 부여 및 관리"[별지2]에 따르고, 출결은 교육부 훈령을 기준하여 처리한다.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2. 학기 내에 지필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의 인정점 반영비율과 반영기준은 [별지2] "정기고사 결시생 인정점 부여 및 관리"를 참고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되 일반학생들과의 형편성·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3. 학기 도중에 전입한 학생은 전 재적교에서 취득한 성적(동일(유사) 과목)이 있을 때는 성적인정 과 반영 방법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취득한 성적(동일(유사) 과목이)없을 때는 전입 이후에 취득한 성적을 전입 이전의 성적으로 반영하되 인정점 부여 방법은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 수행평가의 경우, 재취학, 전 편입학한 학생의 성적처리 방안을 평가 계획에 포함하되, 교 과협의회를 통해 원적교 성적을 유사한 영역 평가의 성적으로 인정 가능
- 4. 유예. 면제 등의 사유가 끝나 재취학한 학생의 성적 일부가 중복될 경우에는 재취학 이후 취득한 성적으로 한다.

제 8조. 학업성적 결과 처리

- 1.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교과 담당교사가 작성하되,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 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고, '원점수/과목평균'과 성취도(수강자 수)'를 산출한다(다만, 체육·음악·미술 교과의 과목은 성취도만을 산출). 단, 전산처리할 경우 전산입력하여 관리함을 워칙으로 한다.
- ※ 체육·예술계 중학교(예술체육 중점학교 포함)에서 학생이 선택 과목으로 체육계 과목 또는 음악·미술계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 2.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과목평균은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과목별 성적일람표 작성 '예시'>

2022학년도 제1학기 국어과 성적 일람표

제2학년 ()반

교과담당교사(

) () [

Į. Į	평가방법 반영비율)	지필평	가(60%)		수행평	가(40%)				
번호	변 명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1차 (30%)	2차 (30%)	(10%)	♦ ♦ ♦ ♦ ♦ ♦ ♦ ♦ ♦ ♦ ♦ ♦ ♦ ♦ ♦ ♦ ♦ ♦ ♦	(10%)	△△△ (10%)	합계	원점수	성취도 (수강자수)
1	김길동	28.50	29.40	8.80	9.60	8.80	10.00	95.1	95	A(452)
2	나민주	25.50	19.20	6.00	8.00	7.00	5.00	70.7	71	C(452)
3										
수경	강자 최고점	30.00	3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경	강자 최저점	9.95	10.00	5.00	6.00	7.00	5.00	42.9		
수	강자 평균	23.42	25.74	8.40	8.16	8.76	7.59	82.0		
ō	학급 평균	21.24	24.43	8.50	7.52	8.91	7.35	77.9		
1	나목 평균								82.1	

- '김길동'의 지필평가 1차 환산점수 28.50(30×95/100=28.50)은 100점 만점에서 95점을 받았을 때이며, 수행평가 ○○○ 환산점수 8.80(10×44/50=8.80)은 50점 만점에서 44점을 받았을 경우이다.
- 수강자 최고점, 수강자 최저점, 수강자 평균, 학급 평균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 성적일람표 합계는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며, 원점수는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하고, 성취도는 원점수를 이용하여 구한다.
- 과목 평균은 수강자 점수에 대한 평균을 의미하며,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 가급적 수행평가 배점과 반영비율을 조정하여 환산점수에서 소수 둘째 자리 이상의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⁴⁾ 성적 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 학생들의 이의신청·접수·처리·확인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 작성된 성적 기록 자료(수행평가 성적일람표 등)를 의미

- 수행평가 점수 30점, 반영비율이 20%이고, 학생이 28점을 받은 경우 환산점수는 18.6666…의 무한 소수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수행평가 배점과 반영비율을 적절히 선정하여 무한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함.
-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처리 기준일은 교과(목)별 평가 계획상 최종 시험일(2차 고사)이며, '명예졸업' 학생은 유예·면제에 준하여 성적을 처리한다.
- 3. 성취도는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 ~ 90% 미만	В
70% 이상 ~ 80% 미만	С
60% 이상 ~ 70% 미만	D
60% 미만	Е

단, 체육·음악·미술 교과의 과목의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80% 이상 ~ 100%	A
60% 이상 ~ 80% 미만	В
60% 미만	С

- 4. 수강자 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수로 한다. 다만, 자유학 기에 해당 교과 담당교사별로 해당 과목의 평가 계획을 다르게 수립한 경우, 이를 학업성적관리규정 으로 정하여 해당 교과 담당 교사별로 수강자 수를 달리할 수 있다.
- 5. 재취학, 전·편입학생과 명예졸업, 유예, 면제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 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수강자 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 전(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의 학생(명예졸업, 유예, 면제 등)과 재취학, 전·편입학생 중 원적교 에서 성적(성취도, 원점수 등)을 취득해 온 학생은 수강자수에서 제외한다.
- 6.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장애학생의 평가 조정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학생이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전라북 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 가.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 시 별도의 평가장 설치·운영, 대독, 대필, 보조 (공학)기기, 보조인력 지원 등 적절한 평가조정을 지원한다.
 - 1)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학생을 위해 점자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필요 시 음성 평가자료를 지원하며,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한다. 또한 묵자(일반문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학생을 위해 확대독서기(개인지참 가능) 또는 확대/축소 평가자료(118%, 200%, 350% / A4 중 택1)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 2) 지체장애학생 중 뇌병변 장애학생을 위해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하고, 상지기 능 장애로 평가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필을 지원한다.
 - 3)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학생을 포함하여 청각장애학생이 듣기평가에 참여하기 어려움 경우 지필평가로 대체한다.

- 나. 학생의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학 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7.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 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면제, 유예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8. 재취학, 전·편입학생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 가. 재취학, 전·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을 합사하다.
- 나. 재취학, 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원적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복학 및 재취학, 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 다. 재취학, 전·편입학한 이후 성적 산출을 위한 원적교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취학, 전· 편입학 이후 취득한 평가의 성적을 반영한다. 다만, 결시 등의 사유로 인정점을 부여해 야 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 라. '가~다'항에서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 마. 원적교에서는 전출학생의 전출시점까지 취득한 성적(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전입교로 전송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정리하여 비공개로 전입교로 송부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 ** 학생이 전출할 때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393호)' 제4조제5항 및 그해설에 따라 전출일자까지 원적교에서 입력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입력하여 전송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자료(교과학습발달상황, 인적·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자유학기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는 정리하여 전입교로 송부하여야 한다.
- * 전입 학생의 이전 학년도 자료 정정은 전출교에서 자료를 받아 전입교에서 처리한다. 다만, 전출교는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의 대조·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여 오류가 없도록 확인하고 자료를 전송할 책 임이 있음.
- 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른 귀국 학생 등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 가.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만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 1) 유학(미인정유학 포함) 후 귀국한 학생의 유학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 란은 공란으로 둔다
- ※ 같은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음.
- 2) 다만,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국내 해당 학년의 동일(유사) 과목 학업성적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되, 동일(유사) 과목 인정 및 결시에 따른 인정점 부여 등의 사항은 전입 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 한국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국내학교와 다른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의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교과목 성적을 직접 입력함.
- 나. 재취학, 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재취학, 편입학 이후 에 취득한 성적과 합산한다.
- 다. 재취학, 편입학 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이전의 국내 학교 성적이 중복되

는 경우에는 재취학, 편입학 이후 성적을 인정한다.

- 라. '가~다'항에서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 10.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생의 성적 처리
 - 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생의 학력 인정과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에 의한다.
 - 나. 조기 진급자의 2학년, 조기 졸업자의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란은 공란으로 두되, 조기진 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인정 평가 결과만 각각 2, 3학년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입한다.
- 11. 방송통신중학교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 이수 처리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제3조의2에 따라 과목 이수를 인정받은 학생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명, 이수시간(단위)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 12.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 수업(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 수강학생 처리
 -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교육법」제24조제3항제1호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출결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3. 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 가.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 활용 수업)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한 원격수 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출결·성적을 처리한다.
- 2) 출결
- 가) 학생의 출석 및 수강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 교육기관의 운영 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함 수 있다.
- 나)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 및 「2022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온라인수업 운영 지침」에 따른다.
- 3) 성적
- 가) 성적처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및 「2022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온라인수업 운영 지침」에 따른다.
- 나) 교육청 및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과목의 이수 인정 기준으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않는다.
- 나.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과 보호필 요 학생의 성적처리
- 1) 학적: 소속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 학적을 둔다.
- 2) 출결
- 가) 출결은 소속학교의 담임교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의 출결 확인서에 따른다.
- 나) 해당월의 수업일수와 출결내용은 위탁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과 소속학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을 합산하여 출결 처리함

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결석한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393호)」[별표8](출결상황 관리 등) 및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 리 시행지침」에 따라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

3) 성적

- 가) 성적은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나)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 소속학교 평가 미응시의 경우 질병결석으로 처리함

4) 기타

- 가) 각종 비교과 영역: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함
- 나) 교육정보 시스템: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처리함

다. 소년원학교 이수학생의 성적 처리

1) 소년원학교 이수학생의 학적 및 학업성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한다.

2) 학적

- 가) 재학생의 소년원학교 입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 ※ 교육정보시스템에서는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함.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2조, 제34조와「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2, 제65조, 제85조를 참조해 학적 등을 관리한다.
- 나)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면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 [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 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보내야 한다.
- 다) (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 서 퇴원하거나 임시 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라) (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 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 마) 위 라)항의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 으로 본다.

3) 출결

- 가) 소년보호기관별 수업일수 인정 여부 처리는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참고자료6] '소년보호기관 관련 처리'를 참조한다.
- 나) 재학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는 위탁소년에 대해 서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 가능함)'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 또는 조사 를 위하여 출석하는 기간과 소년원 송치'에 의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교육기간은 재 적학교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1조제

2항).

-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대안 교육 대상 소년이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정해진 대안교육과정(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위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그기간을 재적학교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5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를 참조해 출석일수 등을 관리한다.
- 4) 성적: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의 '4조의 다목(5)', '4조의 라목(6)의 (마)', '6조의 다목'의 재·전·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해야 한다.
- ※ '가~마'항 이외의 사항은 '**[별지15]** 위탁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참고

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보호기관에 위탁된 학생의 성적처리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u>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아동복지법」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분리보호된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함.* 각 기관의 출결은 그대로 인정하되. 재적교 평가(지필·수행평가 포함)에 미응시한 경우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으로 정하여 인정점을 부여함.</u>
- * 해당 학생의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 등에 따라 학적 변동 없이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음('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방안 시행 안내 및 협조 요청',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4140('21.10.29.)참조).
- ** 「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에 따른 <u>보호처분 6호 대상자 중</u>「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 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함. 아동복지시설의 출결은 그대로 인정하 고, <u>재적교(지필·수행평가)에 미응시한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u>

마.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성적 처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은 「초·중등교육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와 전라북도교육청의 「2022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학기말 성적)에 반영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는 **원적교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교육기관에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국가 및 타시·도에서 운영하는 대 안교육 위탁교육기관도 원적교의 평가에 응시해야함)
- 2) 학생과 보호자, 위탁교육기관에 지필 및 수행평가에 대한 평가계획 및 절차(고사기간, 평가방법, 응시방법 등)를 미리 안내하여 미응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3) 과목별 수행평가 미응시(또는 미참여)에 대한 성적 처리(기본점수 부여 등) 등은 학업성적관리위 원회에서 정하고, 그 내용을 사전에 안내한다.
- 4) 원적교에서 지필고사 기간 및 응시 안내를 했음에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 성적 처리(인정점 부여 등) 등 이 지침에 없는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9조. 출결 상황 관리

1. 수업일수

- 가.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 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 나. 학적변동(면제·유예·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 다. 학적 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취학·편입학·전입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 라.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학생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 마. 전입학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전입학이 불가능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0조 제2항 참조)

2. 결석

가. 결석일수의 산정

- 1)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 같은 종류로 7일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장기 결석으로 처리함.
-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학생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현역병 지원입대는 학생이 졸업 전에 입대하지 않도록 지도하되, 자원입대를 한 경우는 「병역법」제73조에 따라 휴학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을 위한 출석일수를 충족한 경우, '기타결석'으로 처리 가능
- ※ '지원입대'의 경우 신체검사 참여 등은 '기타결석'으로 처리함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 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사 망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9) 경찰청「소년업무규칙」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10) 「공직선거법」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 11) 학교장은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위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는 등의 출결 산정기준은 월 1일 의 범위 내에서 인정함.
- ** 출석인정 시 성적은 본교 규정 [별지2] 4. 인정비율 부여방법에 따른다.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 등교시간대 거주지나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
-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 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 4)~6)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라. 미인정 결석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 정지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4) 「초·즛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체포·도피·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마. 기타 결석

-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 정하는 경우
-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각·조퇴·결과 (단위학교에서 정한 기준은 모든 교사가 일관되게 적용)

- 가.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나. 조퇴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16:30) 사이에 하교한 경우
- 다. 결과 :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라. 위의 2. 나. 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마.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 바.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조퇴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사.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아.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 10조. 교과학습밬닼상황 관리

- 1.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해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교과', '과목', '성취도'를 입력한다.
- 2. '비고'란에는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 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 3.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은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한다.
- **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참여도·태도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진로와 연계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력함.
- 4.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다만 체육·예술 교과(군)는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입력한다.
- 5.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입력한다.
- 6. 선택과목 중 고등학교 교양 교과(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성격의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경우 과목명 및 이수시간을 입력하되 이수시간은 계획된 시간으로 입력하고 이수 여부는 'P'로 처리한다. 단, 전입생의 경우는 전입교의 계획된 시간으로 입력하고 이수 여부는 'P'로 처리한다.
- 7. 체육·예술계 중학교(예술체육 중점학교 포함)에서 학생이 선택 과목으로 체육계 과목 또는 음 악·미술계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 8.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원점수/과목평균'란은 '공란'으로 두고, '성취도(수강자수)' 란에 'P'로 입력한다. 또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에 'P'를 입력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체육·예술 과목은 실기능력, 교과적성 포함)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 ** 자유학기 전출·입 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처리는 '자유학기 활동상황'의「자유학기 전출·입 시 처리 요령」의 내용을 준수함.
- 9.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사항

항 목	내 용
한국학교	한국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국내학교와 다른 경우
학력인정 대안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전입교와 다른 경우
전편압학, 귀국 등에 따른 마아수 교과목 보충 학습 과정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온·오프라인의 방법으로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했는데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영재교육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명교육	당해 학기에 기술·가정, 과학 교과 모두 개설되지 않은 경우
방송통신중학교의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에 따른 과목 이수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방송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 수업)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수강 하였으나 <u>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u> '(성적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산출되지 않은 과목에 한하여 이수내용 기재)

제 11조. 독서활동상황 관리

- 1. 개인별·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단위로 입력한다.
- 2.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교과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제 12조.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관리

- 1.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별 활동 내용, 평가 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은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하고, 봉사활동은 실적을 입력한다.
- 2.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 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 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한다.
- 3. 규정에 의한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u>다만, 누가기록 방법(기재·관리 방법 포함)은 담임교사가 NEIS에 누가기록하여 관리한</u>다.
- 4.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

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 5. '1'항의 동아리활동 중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실적은 활동 인정기간 동안 학교장이 승인한 학교 스포츠클럽활동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 '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 활동시간,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다만, 정규교육과** 정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특기사항을 입력하지 않는다.
- 6. '1'항의 동아리활동 중 정규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한 청소년단체 활동의 단체명은 입력하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 7. '1'항에 따른 자율활동 특기사항은 담임교사가, 동아리활동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 담당 교 사가 입력한다.
- 8. 2012학년도부터 정규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편성하고, 해당 시간은 담당교사가 '동아리활동'란에 활동 내용과 시간을 누가 기록한다.
- 9. 학생이 유예·면제할 경우에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부가기록과 이수시간·특기사항 등을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관한다.
- 10. 전출 시 전입교에서 해당 학생의 누가기록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NEIS에 입력하지 않은 별도의 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 11. 창의적체험활동상황의 누가기록은 일괄기재할 수 있으며, 별도로 결재받지 않는다.

제 13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관리

- 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 2.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 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 3.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행동특성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 4.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기재·관리 방법 포함)은 담임교사가 NEIS에 누가기록 하여 관리한다.
- 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은 별도로 결재받지 않는다.
- 6. 전출 시 전입교에서 해당 학생의 누가기록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NEIS에 입력하지 않은 별도의 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제 14조.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정정

- 1.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년도 종료 시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종료하고,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

용 등에 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절차(4단 결재)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 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7조 인적·학적 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3.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 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하 되,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에 유의하다.
- 4.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6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를 감독· 감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상급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교육부, 시·도교육청 또는 입학전 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제공할 수 있다.
- 5. 학교의 장은 '4'항의 규정에 따라 정정대장을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중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외하여 제공해야 한다.
- 가.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 등
- 나. '인적·학적사항' 항목의 학생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 다. 제18조제4항·제6항에 따른 조치사항 삭제와 관련된 내용

제 15조. 학생 포상

1. 목적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시상함으로서 다양한 특기·소질을 계발하도록 자극하며, 자긍심을 높이고, 학교생활의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2. 시기

포상을 시행하는 시기로 보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포상
- 1) 분기별 , 특별 강조기간 포상(친구사랑주간, 청소년의 달, 어버이날, 스승의 날등)
- 2) 학기말 포상
- 나. 부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포상 : 각종 발표회 우수상 등 필요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여 실시한다.
- 3. 분야 및 기준
- 가. 재학생
- 1) 교과우수상 : 매 학기말에 교과별로 정기고사 성적을 합산하여 성취도 및 원점수를 산출한 후 교과별 7%이내인 자중 평어가'A'인자를 시상하되, 7%가 1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원점수가 최상위인 자이면서, 평어가'A'인자**를 시상하다.
 - 2) 1년 개근상: 당해년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자.
 - 3) 모범상
 - 평소 행하는 바가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중 담임(업무담당교사)추천을 받은자
 - 학기별로 1회 이상 표창하되 다양한 분야의 모범학생을 발굴하여 표창을 실시한다.
 - 4) 이 외의 수상자는 학급(교과 및 업무)담당교사의 추천에 의하여 학교장이 선정한다.
- 나. 졸업예정자

- 1) 교내상
- 가) 학교장상 : 내신 성적 1위인 자 (내신 성적이라 학은 후기고 내신성적 산출한 결과가 1위인 자)
- 나) 공로상 : 학생회 및 학급 활동, 행사활동에 공적이 현저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타의 모 범이 되는 자
- 다) 기능상(예체능, 기타 교과별)
 - : 재학 중 도교육청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 이상 입상한자 또는 교육지 원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1위(최우수상)로 입상하였거나 3번 이상 입상실적이 있는 자
- 라) 봉사상 : 재학 중 대내외적으로 학교 및 학급에 봉사한 실적이 현저한 자로서 담임추 처을 받은 자
- 마) 선행상 : 대내외적으로 선행한 실적이 현저한 자
- 바) 효행상 : 대내외적으로 효행한 실적이 현저한 자
- 사) 3년 개근상 : 3년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
- 아) 3년 정근상 : 3년간 결석일수가 3일 미만인 자(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8회 이하인자, 단, 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 3회를 결석 1일로 간주한다.)
- 자) 1년 개근상: 당해년도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자. (단, 3년 개근상과 중복될 경우 수상하지 아니한다.)
- 2) 교외상
- 가) 학교운영위원장상 : 내신 성적 2위인 자
- 나) 동창회장상 : 내신 성적 3위인 자
- 다) 기타 교외상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부 칙

이 학업성적관리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1]

학적처리 관련 용어

- 1. 입학 : 학교에 들어감(1학년 신입학)
- 2. 취학 :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 3. 재학 : 당해 학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 4. 재취학 :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 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 5. 편입학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 6. 전입학 :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 7. 진급 :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올라감
- 8. 조기진급 : 학칙에 따라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하여 차상급 학년으로 진급함
- 9. 전출 :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전입 학교로 학적을 옮김
- 10. 유급 :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 11. 면제 : 「초、중등교육법」제14조에 따라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 12. 취학유예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 받을 의 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 13.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 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따라 '정원외학적관리'할 수 있음)
- 14. 수료 :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
- 15. 졸업 : 전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학업을 마침
- 16. 조기졸업 : 학칙에 의한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해당 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해당학교의 전 과정을 마침
- 17. 명예졸업 :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 * 유학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비 또는 자비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로 진학함(면제의 한 사유임)

[별지 2]

정기고사 결시생 인정점 부여 및 관리

구분	절차별 업무처리
학업성적 관리규정 확인	○인정점 부여 관련 규정 확인 ○인정 사유 및 인정점 비율 규정 제정 확인 ○제출시기 및 필요 증빙자료 확인 : 결석계, 담임의견서, 공문, 의사의 진단서(의견서), 진술서, 사망 확인서 등의 서류
서류제출	○시험 실시 상황표 또는 결석계 작성 및 제출 ○인정점 부여 관련 증빙자료 확인 : 서류 제출 기한 확인
인정점 부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 증빙서류 검토 확인 - 인정점 부여(공결, 경조사, 생리결, 질병결, 기타결, 미인정결, 부정행위 등) ○인정점 대상자 관련 제출 자료 학교장 결재 ○NEIS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입력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결시생인정점부여기준관리]-{일반결시}-{기준점 수(과목)}-{평균점수 비율(전입생제외)}로 설정
학기말 성적처리	○ 성적산출 대상(고사/영역) 관리 (※ 반드시'기준고사/영역'설정 시 1차고사→2차고사 교차 설정) ○ 성적산출 학생 관리 ○ NEIS 인정점 산출 대상자 : 인정점 부여 ○ 학기말 성적 산출 (과목별) ○ 인정점 산출 대상자 자료와 증빙자료 합철 보관 (감사 시 확인 자료임)

□ 인정비율 및 인정점 관리

1. 인정비율 및 인정점 처리 방법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에는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정 감염병, 병원 입원 등으로 일반학생들과 함께 평가하기가 어려우나 학생과 보호자 등이 응시를 원할 경우 특별시험장을 설치하여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결시를 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시에 따른 기준점수 산출방법[2. 나. 다. 라. 항] 및 인정비율[4.]을 결정한다. 그 결과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출결은 교육부 훈령에 기준하여 처리하며, 평가 인정점의 처리는 인정점 산출 방법[3.]에 따른다.

2. 기준점수 산출 방법

- 가. 인정점 산출은 정상적인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나.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최종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로 한다.(아래 '다'항과 '라'항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함)
- 다.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참고하

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기준점수로 활용한다.

1순위 : 이전 학기 내 동일 과목의 성적

2순위: 이전 학기 내 가장 유사한 과목(교과)의 성적

- 1. 2순위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라'항을 참고하여 기준점수로 활용할 수 있다.
- ※ 이전 학기 내의 성적 활용 시 2차 고사 성적을 우선으로 하며, 성적이 없을 경우 1차고사 성적을 활용함.
- 라. '다'항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평가에 응시한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은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반영한다.
- 1) 해당 학생의 나머지 응시 과목의 지필고사 평균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 2) 전과목 결시로 인하여 기준점이 없는 경우는 해당과목의 전체 학생 성적 평균을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 3) 동일 과목의 평균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 4) 동일 학기의 전과목 평균 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 5) 선택과목이 서로 다른 경우 동일 과목으로 인정하여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 3.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을 활용한 최종인정점 산출 방법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점수× <u>결시고사 평균</u> ×인정점	브서비스
최중 현경점 - 기판	^{점+} ^ 기준고사 평균 ^{^ 현정점}	十分可要

 과목	_{ルロ} 기준고사(1차고사) 결시고		결시고사(2차고사)	최종 이정적
	평균	기준점수	평균	최종 인정점
수학	68.0	65	62.3	47.64

- * 1학기 2차고사를 질병 결시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
- 1) 68.0 : 65 = 62.3 : 인정기준점수
- 2) 인정기준점수 = (65×62.3) / 68 = 59.55
- 3) 인정기준점수 × 0.8(병결 인정점 부여비율) = 47.64
- 4) 최종 인정점 = 47.64

4. 인정비율 부여 방법

- 가. 10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일 단위로 적용)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한 결석
 - 2)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석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학교보건 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석
- 4)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하는 조치시항
- ※「학교폭력에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 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석
- 나. 8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하루 단위로 적용)
 - 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 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결석(담임교사 의견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 부한 결석계 제출)
 - 다) 고사 기간 중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계 제출 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다. 해당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 가) 미인정결석
 - 나) 고사 기간 중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시의 경우(학교장 사전 허락을 득한 후 체험학습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
- 라. 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
 - 가) 부정행위자의 부정행위를 한 해당 과목
 - 나)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별지 3]

시기별 업무 추진 내용

월	업무 추진내용 (중점 추진사항)	
03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교과협의회 구성 ○교과별 평가계획 수립(학교교육과정 계획 수립 연계) • 목적, 방향과 방침, 평가의 종류, 방법, 시기, 유의사항 등 •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채점기준, 반영비율, 실시 기간, 결시자 인정점 부여기준, 이의신청 기간 운영, 기초학력 더딤 학생 지도방안 등 • 수행평가 세부기준(영역별 배점과 채점기준, 실시 기간) • 교과별 성취기준·성취수준, 기준 성취율과 성취도 • 교과별 분할점수 산출방법 • 평가 결과 분석 및 활용 방안 마련 •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학기 관련 평가 방법 및 기준 수립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과 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개정 • 평가단계별 보안 관리 계획 수립 및 명시 • 성취평가제 도입에 따른 교과목별 성적표기 방식과 성취수준설정 방법 명시 ○학업성적관리규정, 교과별 평가규정, 연간 평가 계획 등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결재" ○연간 평가 계획 공지(학교 홈페이지)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전교직원 대상 연수 ○수행평가 관련 연수 실시	평가부서 담당교과 평가부서 평가부서 평가부서 평가부서
04	○ 교과협의회(1학기 1차고사 및 수행평가 관련) 실시 ○ 1학기 1차고사 실시 계획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결재" ○ 1학기 1차고사 계획 등에 대한 전교원 연수 및 보안관리 점검 •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교직원의 책무성에 대한 연수 실시 ○ 1학기 1차고사 실시 계획 공지(학교홈페이지) ○ 학생 출입제한구역 지정(출제시작~고사완료) 및 통제 ○ 출제계획 수립 및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 작성 • 성취기준에 대한 도달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 구성 • 평가 계획에 근거하여 교수·학습 내용과 연계한 문항 출제 • 문항정보표에는 성취기준(내용 또는 코드)을 입력 • 교과협의회를 통한 문항 구조 및 난이도 구성 ○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검증(결재단계) ○ 확정된 고사원안에 대한 인쇄 및 보관(보안 담당자 지정)	담당교과 평가부서 평가부서 평가부서 당교과 평가부서

월	업무 추진내용 (중점 추진사항)	
	○ 1학기 1차고사 실시 •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정기고사 실시계획에 따른 정기고사 • 정기고사 시행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준하여 실시 • 매시간 문답지 "배부시간 5분"별도 확보 • 출제교사는 담당과목 고사시간에 교무실에 대기하거나 교실을 순회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대비하거나 오류 문항에 대한 시속한 조치	평가부서
05	• 출제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적법하게 조치 ○ 채점 결과의 확인 및 수정 • 서답·서술형 평가 답안 채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채점 • 문항 오류, 정답 오류, 채점기준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결재 를 득한 후 수정 및 채점 진행 • 채점 결과의 공개 및 확인 절차 진행 • 이의신청 기간 운영을 통한 채점 결과 확정 • 최종 확정된 성적일람표에 학생 확인(사인 또는 날인)	담당교과
	○ 1학기 1차고사 결과 분석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 문항별 오답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의 분석 → 교과협의회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방향 논의	담당교과
	○ 교과협의회(1학기 2차고사 및 수행평가 관련) 실시 ○ 1학기 2차고사 실시 계획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결재"	담당교과 평가부서
06	○ <u>1학기 2차고사 계획 등에 대한 전교원 연수 및 보안관리 점검</u> •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교직원의 책무성에 대한 연수 실시 ○ 1학기 2차고사 실시 계획 공지(학교홈페이지) ○ 학생 출입제한구역 지정(출제시작~고사완료) 및 통제 ○ 출제계획 수립 및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 작성 • 성취기준에 대한 도달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 구성 • 평가 계획에 근거하여 교수 학습 내용과 연계한 문항 출제 • 문항정보표에는 성취기준(내용 또는 코드)을 입력	평가부서 평가부서 평가부서 담당교과
	 교과협의회를 통한 문항 구조 및 난이도 구성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검증(결재단계) ○확정된 고사원안에 대한 인쇄 및 보관(보안담당자 지정) 	평가부서 평가부서

- 33 -

월	업무 추진내용 (중점 추진사항)	주관부서
	○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수행평가 영역별 채점 결과에 대한 학생본인 확인 • 채점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면밀히 검토 및 처리 • 최종 확정된 성적일람표에 학생 확인(사인 또는 날인) • 수행평가 내용에 대한 학생 개인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1학기 2차고사 실시 •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정기고사 실시계획에 따른 정기고사 • 정기고사 시행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준하여 실시	담당교과 평가부서
07	 ・매시간 문답지 "배부시간 5분"별도 확보 • 출제교사는 담당과목 고사시간에 교무실에 대기하거나 교실을 순회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대비하거나 오류 문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 출제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적법하게 조치 • 채점 결과의 확인 및 수정 • 서답·서술형 평가 답안 채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채점 • 문항 오류, 정답 오류, 채점기준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결재를 득한 후 수정 및 채점 진행 • 채점 결과의 공개 및 확인 절차 진행 	담당교과
	• 이의신청 기간 운영을 통한 채점 결과 확정 • 최종 확정된 성적일람표에 학생 확인(사인 또는 날인) ○1학기 2차고사 결과 분석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 문항별 오답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의 분석 • 교과협의회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방향 논의	담당교과
	○학기말 성적 산출 및 평가 결과 공개 ○학기말 성적 분석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방향 논의 ○정기고사 결과에 대한 학생 개인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담당교과 담당교과 담당교과

월	업무 추진내용 (중점 추진사항)	주관부서
08	○교과별 평가계획 수립(학교교육과정 계획 수립 연계) • 목적, 방향과 방침, 평가의 종류, 방법, 시기, 유의사항 등 •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채점기준, 반영비율, 실시 기간, 결시자 인정점 부여기준, 이의신청 기간 운영, 기초 학력 더딤 학생 지도방안 등 • 수행평가 세부기준(영역별 배점과 채점기준, 실시 기간) • 교과별 성취기준 · 성취수준, 기준 성취율과 성취도 • 교과별 분할점수 산출방법 • 평가 결과 분석 및 활용 방안 마련 •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학기 관련 평가 방법 및 기준 수립 ○연간 평가 계획 공지(학교 홈페이지)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전교직원 대상 연수 ○수행평가 관련 연수 실시	평가부서 담당교과 평가부서 평가부서 평가부서
09~ 10 월	○ 교과협의회(2학기 1차고사 및 수행평가 관련) 실시 ○ 2학기 1차고사 실시 계획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결재" ○ 2학기 1차고사 계획 등에 대한 전교원 연수 및 보안관리 점검 ㆍ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교직원의 책무성에 대한 연수 실시 ○ 2학기 1차고사 계획 등에 대한 전교원 연수 ○ 2학기 1차고사 실시 계획 공지(학교홈페이지) ○ 학생 출입제한구역 지정(출제시작~고사완료) 및 통제 ○ 출제계획 수립 및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 작성 ㆍ 성취기준에 대한 도달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 구성 ㆍ 평가 계획에 근거하여 교수ㆍ학습 내용과 연계한 문항 출제 ㆍ 문항정보표에는 성취기준(내용 또는 코드)을 입력 ㆍ 교과협의회를 통한 문항 구조 및 난이도 구성(공동출제) ○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 과 검증(결재단계) ○ 확정된 고사원안에 대한 인쇄 및 보관(보안담당자 지정) ○ 2학기 1차고사 실시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정기고사 실시계획에 따른 정기고사 ㆍ 정기고사 시행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준하여 실시 ㆍ 매시간 문답지 "배부시간 5분" 별도 확보 ㆍ 출제교사는 담당과목 고사시간에 교무실에 대기하거나 교실을 순회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대비하거나 오류 문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ㆍ 출제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적법하게 조치	담당교과 평가부서 평가부서 평가부서 평가부서 당당교과 평가부서

월	업무 추진내용 (중점 추진사항)	주관부서
10 월	 ○채점 결과의 확인 및 수정 ㆍ서답ㆍ서술형 평가 답안 채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채점 ㆍ문항 오류, 정답 오류, 채점기준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결재를 득한 후 수정 및 채점 진행 ㆍ채점 결과의 공개 및 확인 절차 진행 ㆍ이의신청 기간 운영을 통한 채점 결과 확정 ㆍ최종 확정된 성적일람표에 학생 확인(사인 또는 날인) ○2학기 1차고사 결과 분석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ㆍ문항별 오답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의 분석 ㆍ교과협의회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방향 논의 	담당교과 담당교과
11 월	○교과협의회(2학기 2차고사 및 수행평가 관련) 실시 ○2학기 2차고사 실시 계획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결재" ○2학기 2차고사 계획 등에 대한 전교원 연수 및 보안관리 점검 •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교직원의 책무성에 대한 연수 실시 ○2학기 2차고사 계획 등에 대한 전교원 연수 ○2학기 2차고사 계획 등에 대한 전교원 연수 ○2학기 2차고사 실시 계획 공지(학교홈페이지) ○학생 출입제한구역 지정(출제시작~고사완료) 및 통제 ○출제계획 수립 및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 작성 • 성취기준에 대한 도달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 구성 • 평가 계획에 근거하여 교수・학습 내용과 연계한 문항 출제 • 문항정보표에는 성취기준(내용 또는 코드)을 입력 • 교과협의회를 통한 문항 구조 및 난이도 구성(공동출제)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 과 검증(결재단계) ○확정된 고사원안에 대한 인쇄 및 보관(보안담당자 지정)	담당교과 평가부서 평가부서 평가부서 담당교과 평가부서

	월	업무 추진내용 (중점 추진사항)	주관부서
		○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및 이의시청 기간 유영	다나나 그 기
		 수행평가 열역별 채점 결과에 대한 학생본인 확인 채점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면밀히 검토 및 처리 최종 확정된 성적일람표에 학생 확인(사인 또는 날인) 	담당교과
		 수행평가 내용에 대한 학생 개인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2학기 2차고사 실시 한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정기고사 실시계획에 따른 정기고사 정기고사 시행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준하여 실시 	평가부서
	12	 • 매시간 문답지 "배부시간 5분"별도 확보 • 출제교사는 담당과목 고사시간에 교무실에 대기하거나 교실을 순회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대비하거나 오류 문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 출제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적법하게 조치 • 채점 결과의 확인 및 수정 • 서답서술형 평가 답안 채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채점 • 문항 오류, 정답 오류, 채점기준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결재를 득한 후 수정 및 채점 진행 • 채점 결과의 공개 및 확인 절차 진행 • 에의신청 기간 운영을 통한 채점 결과 확정 	담당교과
		 최종 확정된 성적일람표에 학생 확인(사인 또는 날인) ○2학기 2차고사 결과 분석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ㆍ문항별 오답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의 분석 ㆍ교과협의회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방향 논의 	담당교과
		 학기말 성적 산출 및 평가 결과 공개 학기말 성적 분석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방향 논의 정기고사 결과에 대한 학생 개인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담당교과 담당교과 담당교과
_			

- 37 -

[별지 4]

학업성적 평가 및 보안관리 단계별 업무 매뉴얼

		T	
구분	단계별 업무	세부추진내용	담당자
	학업성적관리규정 정비 및 연수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의 정확성·공정성 확보	관리자, 평가담당
	연간평가계획 수립 (수행평가 포함)	고사일시, 과목, 횟수, 반영비율, 평가영역, 평가방법, 채점기준 등 포함(반드시 교과협의회를 통해 계획 수립)	전 교사
평가 기반		평가 단계별 보안관리 계획 수립 및 보안 책임자(평가관리실, 인쇄실등) 지정	관리자 행정실장 평가담당 평가부장
구축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및 결재	연간평가계획 등 심의 및 학교장 결재	
	연간평가계획 홍보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절차 포함)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이용 사전 안내(학생, 학부모)	평가담당
	평가연수 실시	교원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체연수 강화	전교사
	성적처리 선행작업	NEIS 입력사항 선행처리	교과담당
	고사 시간표, 과목별 시험 범위,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절치 인정점규정, 지각생 및 결시자 처리규정, 이의신청 기간 (영 등 고사에 따른 각종 유의사항. 특히 수행평가는 방법, 약 시, 장소, 배점, 결시자에 대한 처리방법 등을 사전에 반드시 공지		담임 교과담당
	출제 시 유의사항	정기고사 진행 전과정에 대한 유의사항, <u>단계별 보안관리, 학생명가에 대한 교원의 책무성, 부정행위에방 관련 등</u> 연수	평가담당
		출제관련 교과협의회 실시 - 평가범위, 출제유형, 문항 수(공 동출제시 반드시 출제문항 공동검토) 출제·검토	교과담임
출제		지난 년도(학기) 문항 재출제, 출판사 제공 교사용 교재(CD) 및 참고서 전재 여부 등 부적정 출제 사례 확인	교과담임 결재권자
		배점표시, 동점자 양산 방지, 평가문항 수 증대, 배점 다양화, 역배점 지양 등 평가관리 공정성 확보	교과담임
		출제원안 서식 통일(학교, 출제자, 쪽수, 문항수, 배점 등)	평가담당
		출제원안 파일은 암호 넣어 보관(이동식 저장매체 이용), 평가 관련 자료 네트워크 이용 전송 금지 확인용 원안 및 파지 분쇄 *출제 관련 문제지, 자료 등 교외 반출 금지	교과담임
		서답.서술형 채점 기준 작성(부분점수, 유사정답 포함) 파일 암호 넣어 보관	
	학생출입 통제구역 지정 및 홍보	인쇄실, 교무실, 평가관리실 등(분실 및 도난 유의) (원안출제 시작부터 고사종료까지)	평가담당

구분	단계별 업무	세부추진내용	담당자
	평가문항 출제 및	NEIS를 통한 문항정보표 작성 계열 및 과목코드, 총점 확인	교감
출제	고사원안 제출	결재 선에 따른 검토 및 결재(부모 및 친인척 배제) 원안 보관 및 보안 관리 철저	평가담당 평가부장
	분할점수 산출	해당 교과 단위학교 분할점수 산출, 결재 및 학생 공지 (1차고사, 2차고사, 수행평가)	교과담임
		인쇄 담당자 보안 교육, 원안 수령 당일 인쇄 원칙 (인쇄한 문제지, 원안, 파지 보관 철저) ※당일 인쇄가 어려울 경우 평가 원안 평가담당에게 인계	교감, 행정실장
인쇄 및	인쇄 및 보관	인쇄 상태 확인 및 수정, 문제지 매수 확인, 답안지 준비	평가부장
보관	(보안 관리)	인쇄실 출입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금지	인쇄 담당자 교과담임
		인쇄실 및 평가관리실 보안관리 철저(담당자 지정, 이중 잠금장치, 보안경비시스템 운영 등) 문제지 보관장 이중잠금장치 설치	평가담당
		고사 관리 유의사항 연수(교사, 학생 대상 실시) (학부모 감독시 위촉장 수여 및 연수 실시)	평가담당
		학급별 응시 현황 및 고사 시간표 게시(칠판)	학급담임
		OMR 답안지 작성 및 교체 시 유의사항 지도	담임/감독
		전자기기 미제출 금지 안내 및 지도	담임/감독
		부정행위 사전 예방 철저	담임/감독
		실제 고사 시간 확보(준비령 시행, 문답지 배부시간 5분 확보)	담당/감독
	고사 관리 유의사항	지각생 처리 기준 준수	
		결시생 답안 카드 작성	
		부정행위자 발생 시 처리 규정 준수	
시행		답안지 교체 가능 시점 기준 준수	
. 0		회수 답안지 매수 확인	감독
		답안 봉투 및 답안지 감독관 확인란 동일한 날인 또는 서명	
		답안지 봉투의 기재 사항 확인	
		교환·폐기·여분 답지 등 회수	
		평가 당일 발표(해당시간 출제교사는 시험시간 중 대기)	평가담당
	고사감독 배정	담임을 맡은 학급, 교사의 자녀·친인척 등이 속한 학급 시험 감독 배치 금지	평가담당
	고시급국 배경	감독교사 임의 교체 금지(고사 전 또는 후에 결재)	감독
		학교 실정에 맞는 고사감독 배정	평가담당

구분	단계별 업무	세부추진내용	담당자
	고사정답 공개	공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기간, 방법 등 결정	
		답안지 인수 즉시 답안지 매수 확인	7 7 1 1 1 1 1 1
		문항별 배점, 채점기준 등에 따라 채점	교과담임
		결시생·전입생·특기생 등 인정점 부여	교과/담당
	답안 채점	답안지 봉투 서명 확인(감독, 채점, 1검, 2검)	교과담임
평		정답 없음, 정답 수정, 유사답안 추가, 부분점수 추가 등 의 경우 발생시 절차 준수(교과협의화→학업성적 관리위 원회 심의→학교장 결재→수정사항 공지)	교과담임 평가담당
		이의신청 기회 부여(절차에 따라 처리)	교과담임
가	성적 최종 확인	학생 개인별 답안지와 채점표 직접 확인 후 날인	교과담임
	NEIS 성적 마감	학생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성적마감 처리	교과담임
후	성적처리	모든 교과의 성적마감 후 성적처리	평가담당
	성적표 출력·발송	우편으로 성적표 발송 후 학부모에게 SMS 문자 안내	학급담임
	답안지 및 성적확인 자료 보관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	평가담당
	교과별 평가결과 분석 및 환류	동일교과 학급별 편차, 문항별 오답율 분석 등을 통한 수업방법 개선(교과협의회 후 교과협의록 작성)	교과담임
	시험문항 공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공개 기간, 방법 등에 따라 시행	평가담당

[별지 5]

평가 단계별 보안 관리 계획

평가 단계	세부 내용		
평가 기반 구축	- 평가 단계별 보안관리 계획을 세우고, 교원에게 공지한다. - 평가관리실(교무실)의 보안 책임자는 평가 담당교사로, 인쇄실의 보안책 임자는 시설 관리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출제	 출제 원안 파일은 암호를 넣어 보관하며 이동식 저장매체를 사용한다. 평가 관련 자료의 네트워크 이용 및 전송을 금지한다. 교사 확인용 원안 및 파지는 즉시 파쇄한다. 출제 관련 문제지나 자료는 교외 반출을 제한한다. 시험 출제 기간 동안 평가관리실(교무실) 및 인쇄실을 학생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학생들에게 알린다. 		
- 인쇄기간 동안 평가담당자 및 인쇄담당자 외 인쇄실 출입을 제한한다 인쇄 담당자의 보안 교육 및 원안 수령 당일 인쇄를 원칙으로 한다 인쇄실 출입 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한다 인쇄 담당자는 인쇄 작업 후 인쇄 원지 및 파지를 포함한 제반 시험. 련 자료를 평가담당 교사에게 전달하고, 평가담당교사는 원지 및 평. 지를 보관하고 파지는 받은 즉시 파쇄한다 인쇄한 문제지 및 원안는 평가관리실(교무실)의 이중잠금장치가 있는 : 비넷에 보관한다.			
시행	 담임을 맡은 학급, 교사의 자녀, 친인척 등이 속한 학급 시험 감독 배치를 금지한다. 고사 시행 전까지 문제지는 평가관리실에서 보관한다. 고사 시행 중 교무실에 학생출입을 통제한다. 감독교사는 평가 종료 후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고 폐기답안지를 회수하여 즉시 파쇄한다. 		
평가 후	- 교과교사는 답안지 인수 즉시 답안지 매수를 확인한다 성적처리가 끝난 자료를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2022 학생평가 시행 보안 관리 점검표를 참고하여 점검한 후, 내부 결재를 득한다.		

^{**} 학기 초 학생평가 시행 보안관리 점검표를 정기고사 실시 계획에 첨부하여 모든 교원에게 알리고, 정기고사 시행 후에 점검하여 내부결재를 득한다.

[별지 6]

2022 학생평가 시행 보안 관리 점검표

고사명	학기 ㅊ	가고 사	점검일자 2022.		. (요일)	
작성자	(서명)	평가담당 부장교사	(۷	년명)	확인자 (교장)	(서명)

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O, X)	비고
	1. 평가 시행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가?	(-, ,	
	2. 교직원의 자녀, 친인척 등이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관련 교직원을 평가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였는가?		
	3. 평가 시행 전 도덕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였는가?		
	4. 평가관련 자료(원안, 문항정보표, 서술형 채점기준표 등)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개인 보관하였는가?		
출제	5. 평가관련 자료(인쇄물, 참고자료 등)를 시건장치가 있는 서랍에 보관 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6. 평가관련 자료의 네트워크 전송 금지를 준수하고 있는가?		
	7. 평가 원안 결재본을 이중잠금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하였는가?		
	8. 평가관리실의 책임자가 교감으로 지정되어 있는가? * 교장이 아닌 경우 [비고]란에 담당자 작성		
	9. 출제기간 동안 출제장소(교무실 등)에 학생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가?		
	10. 평가지 인쇄기간 동안 평가담당자 및 인쇄담당자 외 인쇄실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가?		
	11. 평가지 인쇄기간 동안 인쇄실 출입시 휴대전화 등(촬영가능 기기)의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가?		
	12. 인쇄실에서는 평가지 수령 즉시 인쇄하고, 인쇄가 마감된 원안지를 즉시 담당자에게 인계하였는가?(수령 당일 인쇄 원칙)		
인쇄	13. 평가업무 담당교사의 입회하에 관련자료들을 밀봉하고 확인하였는가?		
	14. 평가지를 평가관리실의 이중잠금 보관장(또는 이중철제문)에 보관 하고 있는가?		
	15. 평가관리실에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CCTV 등) 및 보안 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가? (비고란에 관련내용 작성)		
	16. 인쇄 작업 후 인쇄 원지 및 파지를 포함한 제반 시험관련 자료를 평가지와 함께 보관하고 있는가?		
	17. 해당 과목 평가지를 고사 당일 평가관리실에서 반출하였는가?		
	18. 감독교사는 평가 종료 후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였는가?		
시행	19. 감독교사는 폐기 답안지를 모두 회수하였는가?		
	20. 고사본부에서는 감독 교사에게 답안지 인수 즉시 매수를 확인하였는가?		
	21. 시행 기간 동안 교무실 등에 학생 출입을 통제하였는가?		
	22. 채점 교사는 답안지 인수 즉시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였는가?		
채적	23. 채점기간 중 학생 답안지를 잠금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세엽	24. 채점기간 동안 채점장소(성적처리실 등)에 학생 출입을 통제하였는가?		
	25. 학생의 확인이 마감된 답안지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였는가?		

[별지 7]

2022학년도 고사 실시 계획

Ⅰ │ 2022학년도 1학기 고사 성적처리 일정 및 고사당일 시정

1. 1차고사

구 분	기 간	담 당 자	비고
정기고사 관련 사전연수	04.13(수) 16:00	평가담당	전 교사 대상
고사원안 및 <mark>문항정보표</mark> 제출	04.22(금)	평가담당	제출마감 일자 엄수
고사원안 검토 및 정정	04.22(금)~04.26(화)	평가담당	
결재, 시험지 인쇄, 보관	04.27(수)~04.28(목)	평가담당	
학년별-학급별 시험지 포장	04.28(목)	교과담당	학급별 2~3장 여 유있게 포장
1차고사 실시	04.29(금)~05.02(월)	감독교사	부정행위 없도록
답안지 채점 및 점검	05.02(월)~05.09(월)	교과담당	
OMR 카드 리딩	05.02(월)~05.09(월)	성적처리담당	
성적확인 및 정정	05.09(월)~05.12(목)	교과담당	리당완료 후 나이스에서 교과담당교사카 채점
성적 이의신청기간(3일간)	05.10(화)~05.13(금)	교과담당	교과별 성적 고지 후 3일 이내
성적단표 및 OMR 카드 제출	05.16(월) 16:00까지	평가담당	
성적표 발송	05.17(화)	학급담임	

2. 2차고사

구 분	기 간	담 당 자	비고
정기고사 관련 사전연수	06.08(수) 16:00	평가담당	전 교사 대상
고사원안 및 문항정보표 제출	06.15(수)	평가담당	제출마감 일자 엄수
고사원안 검토 및 정정	06.15(수)~06.24(금)	평가담당	
결재, 시험지 인쇄, 보관	06.27(월)~06.28(화)	평가담당	
학년별-학급별 시험지 포장	06.28(화)	교과담당	학급별 2~3장 여 유있게 포장
2차고사 실시	06.30(목)~07.04(월)	감독교사	부정행위 없도록
답안지 채점 및 점검	07.04(월)~07.06(수)	교과담당	
OMR 카드 리딩	07.06(수)~07.08(금)	성적처리담당	
성적확인 및 정정	07.09(금)~07.12(월)	교과담당	리당완료 후 나이스에서 교과담당교사가 채점
성적 이의신청기간(3일간)	07.11(월)~07.13(수)	교과담당	교과별 성적 고지 후 3일 이내
성적단표 및 OMR 카드 제출	07.14(목) 16:00 까지	평가담당	
성적표 발송	07.15(금)	학급담임	

* 교과담당 교사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전산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킨 후 <u>3일간의 이의신청 및 정정기간 설정</u>하고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구 분	시작	끝	비고
조 회	사전교육	08:40	08:50	담임교사가 임장하여 평가 시 유 의사항 전달 및 출결사항 기재
	문답지 배부	09:00		감독교사는 문제지와 답안지를 배부
1 교시	평가 진행	09:05	09:50	감독교사는 정면에 위치
	문답지 배부	10:00		감독교사는 문제지와 답안지를 배부
2 교시	평가 진행	10:05	10:50	
	문답지 배부	11:00		감독교사는 문제지와 답안지를 배부
3 교시	평가 진행	11:05	11:50	

____ Ⅱ │ 정기고사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 시 유의사항

1. 시험문제 출제 시 유의 사항

- 가. 2022 교과별 평가계획 및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출제하고 평가
- 나. 학년별 동일과목 교과협의회를 통한 공동출제 성적차를 최소화(출제문제 학년별로 필히 공 동 검토), 지난 년도(학기) 문항 재출제, 출판사 제공 교사용 교재 및 참고서 전재 여부 등 확인
- 다. 고사 관련 자료(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표 등)에 반드시 비밀번호 설정, 네트워크 공유금지, 메시저 전달 금지, 반드시 개인용 이동저장매체를 사용
- 라. 출제 완료 후, 수업 교실이나 기타 장소에서 특정 학생에게 출제 문제를 암시하거나 정리 명목으로 출제 문제 암시하는 의혹 시비 철저 차단
- 마. 난이도에 따른 다양한 배점으로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기. 문항마다 배점 표기하기
- 바. 출제 원안 서식 통일 글자크기(11p), 줄 간격(160%)
 - 1, 2, 3····· 로 표기, 답지 번호 : ①, ②, ③, ④, ⑤ 로 표기 단, 서답형의 경우 [서답형 1] 로 표기
 - 서술형 문항 번호는 서답형 범주에 포함시키고 서술형임을 표시함
 - 예) [서답형 3]에 이어서 서술형 출제시 [서답형 4번(서술형)]
- 아. 문항 수준은 상(15-25%), 중(50-70%), 하(15-25%)를 권장
- 자. 서술형 문항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 20% 이상 출제, 도덕: 10% 이상)
- 차. 서답형, 서술형 문항의 경우 문항정보표 또는 별지에 채점기준, 부분점수 등 채점방법 상세히 기록해서 제출
- 카. 출제 문항 중 부정적인 발문에 대하여는 진한 글씨체로 작성하고 밑줄 긋기
- 타. 시험지 원안의 꼬리말에는 전체 페이지 중 몇 번째 페이지(1/7), 과목명, 고사실시 계열명 등을 기록함
- 파. 출제한 고사원안과 문항정보표, 채점기준표(서술형) 등은 정해진 제출기한 내에 평가계에 제축
- 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금지함. 이와 관련하여 출제 단계에서 선행출제 등 오류 를 최소화하고 교과진도운영계획과 정기고사 출제 문항이 일치되게 출제함.

- 거. 교과담당교사는 평가담당 교사로부터 인쇄된 문제지를 받아 인쇄상태 및 장수를 철저히 확 인하고 여분 시험지와 함께 학급별로 포장하여 평가담당교사에게 제출.
- 2. 시험답안 채점 및 결과 처리 시 유의 사항
- 가, 문항정보표 정답/배점 입력
- 1) 채점을 위한 정답과 배점은 교무업무시스템에서 교과담당교사가 직접 입력
- 2) [성적]-[지필평가]-[<mark>문항정보표</mark>]에서 '고사', '계열/학년/학과', '과목' 선택 → 조회 → 선택 형-서당형 탭 → 문항별 '배정'과 '당안'을 입력하고 저장
- 나. 채점
- 1) 평가 후 성적처리 담당교사가 카드리딩-결과 파일 업로드하면 교과담당교사가 나이스 상에서 채점
- 2) [성적]-[지필평가]-[채점]에서 '고사', '학년', '과목' 선택 후 조회→특정 반 선택 후 검증하여 이상이 없으면 → '학생답안선택형'을 선택 → 채점 채점 시 '학생답안선택형'라의 '학생답안서답형 점수'를 선택함(기본값)
- 3) OMR카드에 서답형 답을 마킹하지 않고 [성적]-[지필평가]-[성적관리]에서 서답형 점수를 입력했을 경우는 '성적관리 서답형'을 선택하여 채점
- 다. 교과담당교사가 학생들의 점수와 결시명칭, 학적변동 등을 확인하고, 학생답안이 없는 결시생과 학적변동 학생은 '결시명칭' 또는 '고사별 학적변동' 란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저장
- 라. 학생들의 서답형 점수를 OMR 카드에 마킹하여 업로드하지 않았을 경우 [성적]-[지필평 가]-[성적 관리]를 통해 직접 입력
- 마. 학생들의 고사성적 확인을 위해 정오표를 출력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함.
 - [성적]-[지필평가조회]-[개인별성적일람표조회]에서 '고사', '계열/학년/학과', '반' → 조회 → 일괄 출력하여 학생 개인에게 배부하여 확인
- 바. 학생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1) 성적에 대한 학생들의 이의신청 접수
- 2) 교과담당교사는 [성적]-[지필평가]-[학생답관리]에서 '고사', '계열/학년/학과', '과목', '강의실' 선택 후 조회 → 학생 본인의 OMR 카드를 확인
- 3) 학생 답안을 수정해야 할 경우 OMR카드를 다시 읽어 [성적]-[지필/수행선행작업]-[성 적파일 올리기] 한 후 해당 학급에 대하여 [성적]-[지필평가]-[채점]에서 재 채점을 실 시함. [성적]-[지필평가]-[학생답관리]에서 선다형 답은 수정할 수 없음(잠금/해제 후 서답형 점수는 수정 가능)
- 사. 성적일람표 출력 및 학생 확인
- 1) 성적에 대한 학생들의 이의신청 해결 또는 기간 종료 후 실시
- 2) [성적]-[지필평가조회]-<u>[교과목일람표조</u>회-학급별]에서 '고사', '계열/학년/학과', '반' → 조 회 → 출력
- 3) 성적 결과는 학생 본인에게만 공개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확인 후 완료된 성적일람표는 교과당당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평가당당 교사에게 제출
- 아. 서답형 답안 채점시 유의사항
- 1) 채점은 해당교과의 출제교사 공동채점을 원칙으로 함
- 2) 채점은 학교 내에서 하며 학교 외부로 답안지 반출 금지
- 3) 정답은 O, 오답은 X로 문항 번호 위에 적색 펜을 이용하여 표기
- 4) 정정 사항은 두 줄을 그어 정정한 후 날인
- 5) OMR 카드 봉투 표지에 초검, 재검 교사는 서명 및 날인

- 6) 서답형, 서술형 답안 채점 시 각 문항마다 부분 점수를 반드시 기록
- 7) 서답형, 서술형 점수를 OMR카드에 이기 시 번호, 이름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마킹
- 8) 채점 도중 발생한 추가 유사정답, 부분점수는 반드시 교과협의회를 거쳐 추가 결재
- 9) 성적 이의신청 기간을 홍보하고, 성적의 정정은 정정원에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야 함
- 자. 성적 마감
- 1) 교과담당교사가 해당고사 성적처리 절차를 마감함
- 2) [성적]-[지필평가]-[성적관리]에서 '고사', '계열/학년/학과', '과목', '강의실'을 선택 → 조회→마감함

Ⅲ │ 학급 담임교사의 학급지도 유의사항

- 1. 출제 및 고사 기간 중 교무실에 학생 출입 금지 지도
- 2. 고사 당일 칠판에 재적 및 응시 상황을 정확히 기재

[예 : 재적 14명, 응시 13명, 결시 1101 홍길동(질병)]

- ※ 출결사항에 '사고결'은 없으며, '미인정결'로 표시
- 3. 고사 당일 책상은 서랍이 교탁 쪽을 향하도록 돌려놓고, 책상 속을 비우고 가방은 지퍼를 채 워서 교실 앞쪽에 가지런히 정리 정돈 지도
- 4. 고사기간 중 **휴대폰 및 전자기기(mp3, pmp, psp 등의 게임기) 등 소지 불가** 사전지도, 책상 위 낙서 금지 등 부정행위 처리사항 지도, 부정행위 적발 시 선도처분 및 0점 처리
- 5. 훈화를 통하여 올바른 수험태도 및 OMR 카드 작성 요령 지도
 - 답안용 카드에 학번, 성명, 과목명, 계열코드, 과목코드 등을 정확히 기록 할 것
- 6. 답안용 카드의 모든 마킹은 <u>검정색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으로</u> 하며, **답안용 카드의 모든 글씨는 <u>검</u> 정색 또는 청색펜으로** 작성함. 서술형 및 서답형 답안의 수정 시 두 줄 긋기

(OMR 답안지, 서술형 답안지 모두 연필, 샤프펜, 적색펜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절대 금지)

Ⅳ 시험 감독교사 유의사항

1. 시험 감독 배정

자녀 및 친·인척 관계, 담임교사는 해당 학급의 감독을 금지하고. **발표된 감독 시간표를 임의로 변경하여 감독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독교사가 감독을 교체해야 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고 사 시행정에 반드시 평가담당교사와 혐의하여 고사감독 배정표에 반영하고 고사 정 또는 후에 결재를 올림

2. 시험 시작 전

- 가. 소지품 정리 정돈 및 휴대폰 등 통신기기 수합 (담임교사 또는 감독 교사)
- 나. 조용히 눈을 감고 손은 무릎 위에 놓고 대기
- 다. 감독 교사는 답안지 봉투에 수검학생 현황을 기록하고, 문제지와 답안지를 배부
- 라. 답안용 카드의 모든 마킹은 <u>검정색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u>으로 하며, 답안용 카드의 서답형· 서술형 답안의 모든 글씨는 <u>검정색 또는 청색펜</u>으로 작성함 (연필 또는 샤프펜, 적색 펜 수 정액 및 수정테이프 절대 금지) 지도

3. 시험 진행 중

- 가. OMR 카드는 학생 수에 맞게 배부하고, 여분은 시험 종료 후 평가계에 제출
- 나. 문제지 배부 후 학생들에게 시험지 인쇄 상태와 전체 쪽수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상이 있는 시험지와 답안지는 즉시 교체

- 다. 감독 교사는 교실 정면 중앙에 위치여 정숙한 시험장 분위기 조성
- 라. 시험 중 중간 퇴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중간에 퇴실하게 될 경우 답안 지를 제출한 뒤에 허용하거나 복도감독 교사가 동행
- 마. 감독 교사는 답안지에 학년, 반, 번호, 이름, 과목코드를 바르게 기재하고 표기했는지 확인 하고 감독 확인란에 날인 또는 자필로 확인
- 바. 답안지 교체 허용 시간 안내 (예 : 시험 종료 5분전까지만 답안지 교체를 허용합니다)
- 사. OMR카드 회수용 봉투 및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자필로 성명 기재
- 아. 결시자를 확인

4. 시험 종료 후

- 가. 시험 종료령이 울리면 OMR카드 답안지는 책상 위 오른쪽, 기타 답안지는 왼쪽에 , 손은 무릎 위에 올려 놓고 눈을 감게 한 후 맨 뒤에 앉은 학생으로 하여금 최대한 신속하게 답안 지를 회수하도록 함
- 나. OMR카드 등 모든 답안지는 번호 순서대로 수합하고 매수를 반드시 확인함
- 다. OMR카드는 일체 수정할 수 없으며 카드 교체 시 뒷면의 이기 여부도 확인 (OMR카드 답란 에 수정테이프 또는 수정액 사용 불가)
- 라. OMR카드의 답란에 적색 플러스펜으로 표시했더라도 <u>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마킹하지</u> 않은 경우는 모두 오답 처리(담임과 감독교사는 수시로 환기)
- 마. 고사 중 교환하여 폐기할 OMR카드는 그 자리에서 찢어 폐기처리
- 바. 수거한 답안지 매수와 확인날인 여부를 확인한 후 봉투에 담아 즉시 평가계에 제출

5. 부정행위자 처리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지도를 철저히 하며 부정행위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

- -학생 진숙서, 증거물, 감독교사 확인서 등을 갖추어 인성인권안전부장 및 평가계에 제출
-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선도규정에 따라 처리
- -휴대폰 및 전자기기 등을 소지하고 고사에 임하는 학생은 부정행위자로 처리

[별지 8]

2022학년도 고사원안 양식

1. 2022학년도 정기고사 원안 양식 (맑은고딕 11포인트, 줄간격 160)

고사명	2022학년도 1학기 1차	h고 사	24	계	부장	교장
과 쁙	2학년 국어		XH			
고사실시 년 월 일	2022년 4월 일 교시	출제	44.60		(61)	
-65 CH	행 문항 1~20. 서입형 문항 1~5					
포 다음 문제	총 잘 읽고 묶음에 맞는 당동 답던	-×1				
에 바르게 되	E시하시오					
1. ©						
(2)						
GD						
(5)						
서답함(단답)	SE() 1.					
서답병(서울)	ter) 2.	1				
1						

2. 문항정보표 양식

()				- 5	4	부작	교찰
		문 항 정 보 표						
	20	922학년도 1학기 1자고사	()	학년				
	고사일	시 2022년 ()월 ()일 ()교시			债	제자 :	(인)
		송점 100.00 전	선택함	0	점	,	유민형	0 23
	Α.	선택원	문항					
문항 번호	내용영역	설취기준		난이도		배절	창합	
변호	чесн	8776	29/JE		景響	쉬움	m a	86
1								
2								
3								
4								
5								
6								
7								
8								
-				_				

3. 2022학년도 서답형(서술형) 문항 채점표 양식

◆ 2022학년도 서답(서술)형 문항 채점표

		2022학 년 서	도 1학 7 술형 문	(국어 항 채점기)과 1 준표	차 고	! 사		
학년	1	출제교사	(인)	실시일자	월	일	요일	교시	

번호	정 답	채점기준	배점
서답형1			
서답형2			
서답형3			
서답형4			
서답형5			
서답형6			
서답형7			

서술형 예시답안 및 <mark>채점기</mark> 준						
번호	예시답안	채점기준	배점			
서답형6						
(서술형)						
서답형6						
(서술형)						
서답형6		400				
(서술형)						
서답형6						
(서술형)						
서답형6						
(서술형)						
서답형6						
(서술형)						
서답형6						
(서술형)						

[별지 9]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처리 절차

1. 부정행위 예방 대책

-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교원 연수 실시
- 부정행위의 범위를 제정하여 학생들에게 미리 공고
- 책상은 서랍이 교탁 쪽을 향하도록 돌려놓음
- 문제지 혹은 답지의 글씨가 지나치게 크거나 진하면 경계
- 학생들이 답안지 작성 시, 다른 학생이 답안을 볼 수 없도록 유의
- 종료령이 울리면 모두 움직이지 않게 하고 답안지를 회수함.
- OMR 답안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여분의 OMR 답안지를 반드시 회수.

2. 부정행위의 범위(범위)

- 휴대전화,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통신기기를 제출하지 않음
- 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 줄 것을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 두 학년이 공조한 부정행위
- 감독교사에게 질문을 하여 주의를 흩어놓은 다음 답을 알려줌
- 감독교사에게 시간을 물어 보면서 책상 밑에서 손짓으로 알려줌
- 시험지와 동일한 지질의 종이에 미리 내용을 적어 두고 시험지 위에 붙임
- 시험지가 2장 이상인 경우 똑같은 크기의 프린트 물을 시험지에 포개어 놓음
- 답안지를 2장 이상 받아 한 명이 두 명 답안지를 작성하여 몰래 제출
- OMR 답안지를 교환하여 답안지를 대리 작성
- 미리 구해 놓았던 OMR 답안지 뒷면에 교과 내용을 적어 둠
- 다 풀고 엎드린 후 시험지나 답안지를 옆에 두고 겨드랑이 사이로 보여 주거나, 다른 학생이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답안을 기재
- 팔짱을 끼고 한손으로는 문제번호, 다른 한손으로는 답안을 가르쳐 줌
- 서로 정확히 맞춰 놓은 시계를 이용하여 시작 신호(주로 기침)와 함께 모든 문항의 답안을 알려 줌
-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면 다른 학생이 주움(기름종이 등)
- 지우개에 정답을 쓰고 빌려 중
- 부정한 휴대물을 소지하거나 학용품 등에 보관하는 행위
- 자리를 바꾸어 앉는 행위
- 시험 종료 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시험 종료 전 무단이탈 행위
- 감독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사전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모의하는 부정행위

-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이외에도 시험 중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시험에 임하는 행위

3. 부정행위 처리 절차

- 1) 부정행위 사안 발생(부정행위가 일어나면 모든 학생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
- 2) 감독교사의 신고
- 3)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부정행위의 여부 결정
- 4) 부정행위자로 결정되면, 해당 교과의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한다. (부정행위자 협조자 및 관련자역시 0점 처리함.)
- 기타 특수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행위 예방 조치

구분	내 용
부정 행위 유형	 ✓ 휴대전화, 무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부정행위에 사용 가능한 전자기기 미제출 ✓ 휴대전화 문자 전송, 이어폰 사용, 음성 메시지 전송, 인터넷 이용 사전 모의 ✔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 줄 것을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두 학년이 공조한 부정행위 ✓ 감독교사에게 질문을 하여 주의를 흩어놓은 다음 답을 알려줌 ✓ 감독교사에게 시간을 물어 보면서 책상 밑에서 손짓으로 알려줌 ✓ 시험지와 동일한 지질의 종이에 미리 내용을 적어 두고 시험지 위에 붙임 ✓ 시험지가 2장 이상인 경우 똑같은 크기의 프린트물을 시험지에 포개어 놓음 ✓ 답안지를 2장 이상 받아 한 명이 두 명 답안지를 작성하여 몰래 제출 ✓ OMR 답안지를 교환하여 답안지를 대리 작성 ✓ 미리 구해 놓았던 OMR 답안지 뒷면에 교과 내용을 적어 둠 ✓ 다 풀고 엎드린 후 시험지나 답안지를 옆에 두고 겨드랑이 사이로 보여주거나, 다른 학생이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답안을 기재 ✓ 팔짱을 끼고 한손으로는 문제번호, 다른 한손으로는 답안을 가르쳐 줌 ✓ 서로 정확히 맞춰 놓은 시계를 이용하여 시작 신호(주로 기침)와 함께 모든 문항의 답안을 알려 줌 ✓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면 다른 학생이 주움(기름종이 등) ✓ 지우개에 정답을 쓰고 빌려 줌 ✓ 커닝 페이퍼를 학생증 케이스 볼펜 속에 보관 ✓ 자리를 바꾸어 앉는 행위 ✓ 시험 종료 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혼란한 틈을 타서 서답형문항의 답안을 베끼거나 답안지를 걷는 학생들이 알려주는 경우도 있음(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부정 행위 예방 조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교원연수 실시 ✓감독교사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는 불시에 좌석 이동 조치 가능 (사전 협박에 의한 부정 행위 방지에 도움) ✓감독 중에 학생이 질문을 하는 경우 다른 학생의 행동을 필히 주시 ✓문제지 혹은 답지의 글씨가 지나치게 크거나 진하면 경계 ✓학생들이 답안지 작성 시는 다른 학생이 답안을 볼 수 없도록 유의하고, 필기도구는 진하지 않은 것 사용 ✓종료령이 울리면 모두 움직이지 않게 하고 답안지를 회수 ✓OMR 답안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분의 OMR 답안지는 반드시 회수하며, 평가계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교사가 1명인 경우 답안지 서명 보완책 강구(서명 중 부정행위 발생) ✓질문을 일체 금하고 필요한 경우 조용히 손을 들어 감독교사의 조치를 기다리게 하며 학생들의 소리 동작 등에 유의 등
부정 행위 처리	 ✓부정행위가 일어나면 현장에서 모든 학생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 ✓시험기간 중 휴대전화 소지 금지 등 부정행위 예방, 부정행위자 처벌 규정 강화 ✓부정행위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조치 및 선도위원회 회부 ✓부정행위 가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의 강화 및 엄격한 적용 등

[별지 11]

이의 신청 처리 절차 및 기간

- 1. 운영 목적: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의 공정성·정확성·신뢰성·객관성 확보 및 공정한 성적처리
- 2.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및 정정기간은 학생 성적확인 직후 3일을 부여한다.
- 3. 이의신청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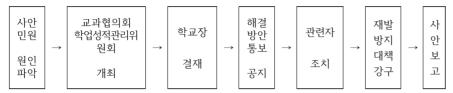
4. 유의사항

- 가. 교과별 평가규정 및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이의신청 기간 운영에 대한 내용 반드시 포함
- 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교과협의회를 개최하여 공동 대책 논의
- 다. 교과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의신청 처리 방법에 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받 아 학교장 결재 후 결과 처리
- 라. 이의신청 처리 전·후 변경된 평가관련 서류는 결재 절차를 거쳐 보완
- 마. 평가의 공정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별지 12]

평가 관련 사안(민원 포함) 발생 시 처리

1. 사안(민원) 발생 시 처리 절차



- ※ 중대 사안(시험지 유출 등)일 경우 사안 인지 후 즉시 교육지원청에 유선 보고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 대책 결정
- 2. 절차준수 목적
- 가. 사안(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정상적인 학사운영 지원
- 나. 학교 학업성적관리 방안체계 재정비 및 평가의 공정성·정확성·신뢰성 제고
- 다. 사안(민원)의 재발 방지를 통한 학업성적관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3. 사안(민원)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
- 가. 사안(민원)의 원인 및 문제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파악
- 나. 사안(민원)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즉시 소집
 - 관련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 공정성·정확성·투명성·신뢰성에 바탕한 해결방안 모색
 - 추가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결방안 도출
- 다. 도출된 해결방안에 대한 학교장 결재
- 라. 민원인에게 해결방안 안내
 -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유선, 이메일,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안내
- 마. 관련자 조치
 - 사안에 따라 경위서 징구 및 주의·경고·징계 등 조치
 - 사립학교의 경우 관련자를 재단에서 징계
- 바. 재발방지 대책 강구
 - 사안(민원) 내용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사. 사안보고: 사안보고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하여 지역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평가담당 장학사에게 보고

[별지 13]

일부 문항 출제오류로 인한 재시험 처리

- 1. 재시험을 치러야 하는 경우
- 가. 정답이 없거나 모두 정답인 경우
- 나. 내·외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문항에 대한 타당도·신뢰도가 떨어진 경우

2. 재시험 절차

- 가. 출제오류 내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교과협의회 개최
- 나. 관계자에 대한 사유서 징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한 대책 수립 및 학교장 결재
- 라. 출제오류 및 재시험 일정 등에 대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안내
- 마. 재시험 실시, 채점, 검토, 성적처리
- 바. 재발방지를 위한 전교원 대상 연수 실시 및 사안보고

3. 관련서류 보완

- 가, 재시험 문항에 대한 고사원안 및 문항정보표 추가 작성,제출
- 나. 재시험 일정마련
- 다. 재시험에 따른 성적처리 방법
- ** 학기말 반영비율이 30%인 1차고사 선다형 10번 문항 5점 배점인 경우의 출제오류에 대한 처리과정
- 1) 다음 작업을 먼저 수행한 후 처리
- 가) 나이스 [지필평가]-[마감관리]에서 해당과목의 마감을 해제
- 나) [지필평가]-[문항정보표]에서 해당과목을 [조회]한 후 [조회]버튼 아래에 있는 [삭제]버 튼을 클릭하여 나타내는 대화상자에서 [정답/배점]을 선택하여 삭제
- 다) [지필/수행 선행작업]-[지필평가고사관리]에서 해당고사 해당과목의 만점과 반영비율을 아래 계산방법과 같이 조정하여 입력
 - [지필평가]-[문항정보표]에서 [1차고사] 해당 과목을 선택한 후 100점 만점으로 입력되었던 것을 해당 문항의 배점만큼 감소시켜 만점을 조정하고 출제오류에 해당하는 문항의 배점을 0점으로 수정하여 채점
 - 선다형 10번 문항이 오류이고 배점이 5점이므로 기존에 선다형 만점이 50점이었다면 오류 문항에 해당되는 5점을 뺀 45점으로 수정하고 과목만점을 95점으로 수정하여 저장

- [지필/수행 선행작업]-[지필평가고사관리]에서 고사를 추가(예, 1차추가고사 등)하고 [지필/수행선행작업]-[지필평가과목관리]에서 해당과목을 추가한다. 이 때 학기말 반 영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입력
- 기존의 만점 : 변경되는 만점 = 기존의 반영비율 : 변경되는 반영비율
- x(변경되는 반영비율)= (변경되는 만점×기존의 반영비율)/100
- 1차고사 반영비율계산 100:95=30:x x=(95×30)/100 x=28.5 - 1차 추가고사 반영비율계산
- 1차 추가고사 반영비율계산 100:5=30:x x=(5×30)/100 x=1.5
- ※ 소수 3자리 이상 발생될 경우와 결시자 인정점 부여를 위한 기준고사 영역 설정은 해당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 [지필평가]-[문항정보표]에서 [1차추가고사] 해당 과목을 선택한 후 선다형 만점 및 과목만점을 5점으로 입력하여, 1번 문항에 대해 재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출제한 내용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결재를 득한 후 재시험을 치름. 단계별로 정기고사와 같은 방법으로 시스템에 채점
 - 학기말 처리를 위해 [성적산출선행작업]-[성적산출대상고사/영역관리]에서 결시생 인 정점 처리를 위한 기준고사 영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력 한 후 학기말 처리
 - (예: 1차고사 ⇒ 2차고사, 1차추가고사 ⇒ 1차고사, 2차고사 ⇒1차고사 등과 같이 직전 또는 직후 성적을 기준으로 처리)

[별지 14]

학생평가 관련 사안(민원 포함) 보고

운봉중학교장

보고일		보고자	
	사안	개요	
학년	○학년	고사명	○학기 ○차고사
과목명		재시험 여부	○, ×
재시험 사유	시험범위오류, 문항오류,	고사관리오류,	문항유출, 문항전재, 기타
재시험 날짜		재시험 문항수	

• 사안 내용(사안 발생 경과, 원인 및 사안 인지 경과 등)

•조치 내용(회의 개최 일시 및 결정 내용 등)

• 조치 결과(민원 해결 처리에 따른 결과 등)

- 붙임 자료
- (교과협의회 회의록,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 경위서, 가정통신문 등)
- ※ 학교장 결재 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에 제출
- ※ 위는 재시험 사안 중심 예시임. 사안별 특성을 고려하여 양식 변경 활용해야 함

[별지 15]

위탁학생, 병원학교 · 원격수업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종 류	소년보호기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건강장애학생 및 3개월 이상 외상적 부상 학생의 병원학교, 원격수업
학적사항	• 재학생에 준하여 관리함.	• 재학생과 동일하게 관리함.
출결상황	• 소년보호기관의 출결 그대로 인정함. ※ 수업일수는 재적학교의 수업일로 제산하여 인정함	소속교의 출결과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출결을 합산하여 처리함. 평가기간 등 소속학교의 등교일은 소속교에 서 출결처리 함.
성적 (지필평가/ 수행평가)	<생적산출 소년보호기관> 소년보호기관의 성적을 인정함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음). 재·전·편입생의 성적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함. 소년보호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하되,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가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을 입력함. 소년원학교 학기말고사 시작 이후 입교한 경우 전적학교 시험 응시 및 전적학교에서 성적처리 학기말 성적처리 이전 복교 시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함. 성적미산출 소년보호기관> 소년보호기관에서 성적이 미산출 되는 경우 재적교 평가에 응시함(미응시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소속교 평가에 응시함(소속교성적산출에 포함). 소속교 평가 미응시의 경우 질병결석으로 처리함.
각종 비교과 영역	•소년보호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함.	•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함.
교육정보 시스템	소년원 교과교육과정개설 소년원학교: 위탁학생 관리 교과교육과정미개설 소년원학교: 미인정결석 처리 단8호 처분자는 원적교 수업일수 인정 소년분류심사원: 원적교 수업일수인정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원적교 수업일수 인정	•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처리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u>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u> 또는「아동복지법」및「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분리보호된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u>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함.</u> 각 기관의 <u>출결은 그대로 인정하되, 재적교 평가(지필수행평가 포함)에 미응시한경우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으로 정하여 인정점을 부여함.</u>

^{*} 보호처분 6호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함. 아동복지시설의 출결은 그대로 인정하고, 재적교(지필·수顿평가)에 미응시한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 보호처분 7호 학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8조(분류처우) 제3항에 따라 <u>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수용)은 위탁학생으로 등록</u>하여 관리함.